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규정집

2026. 4. 8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 목 차 >

I.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40개)

내규 및 지침명	내규 및 지침 번호	비고(담당)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교무 조직 1-1-1	강석호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내규	교무 조직 1-1-2	이은지
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교무 관리 1-2-1	정진영
의과대학 강사로 지급 지침	교무 교원 1-3-1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업무 지침	교무 교원 1-3-2	정진영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 지원 지침	교무 교원 1-3-3	정진영
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1	강석호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2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3	이은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4	염인실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5	정진영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 내규	교무 위원회 1-4-6	염인실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교육 평가 2-1-1	이은지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교육 평가 2-1-2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교육 운영 2-2-1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1	이은지
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2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3	노현주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4	김장균
의과대학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5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교육 위원회 2-3-6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	연구 윤리 3-1-1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연구 학생 3-2-1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연구 학생 3-2-2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연구 학생 3-2-3	정진영

내규 및 지침명	내규 및 지침 번호	비고(담당)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임상 위원회 4-1-1	김장균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	학생 관리 5-1-1	노현주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학생 관리 5-1-2	정진영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학생 관리 5-1-3	정진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행동 규범	학생 관리 5-1-4	정진영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학생 관리 5-1-5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학생 관리 5-1-6	김장균, 노현주
의과대학 의학과 편입학 운영 지침	학생 관리 5-1-7	김장균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1	정진영
의과대학 장학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2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학생 위원회 5-2-3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기금/후원 6-1-1	정진영
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기금/후원 6-1-2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기금/후원 6-1-3	정진영
사물함 운영 지침	기타 관리 7-1-1	정진영

II. 대학 규정(의과대학 관련 6개)

규정명	규정 번호	비고(담당부서)
교원 인사 규정	4-1-1	교원인사팀, 기획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4-1-5	의대교학팀, 기획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4-1-6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4-1-26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규정	4-1-31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규정	4-1-45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8-3-1	

III.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제정/개정, 폐지 현황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23. 9.14
개정 2014. 5. 1	개정 2024.11.14
개정 2016.10. 1	개정 2024.12.31
개정 2019. 5. 9	개정 2025. 4.22
개정 2021. 2.27	개정 2025.11.07
개정 2022. 2.10	개정 2026.04.08
개정 2023. 8.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을 두며 자격 및 임기는 “직제 규정” 제8조 2항에 따른다.

②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한다.

1. 교수의 선발을 포함하는 교무 행정
2. 소속 교직원의 지휘, 감독
3. 소속 학생의 지원, 지도
4. 기타 대학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부학장 및 교육연구부장) ① 대학에 교무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육부학장, 학생부학장, 임상의학부학장을 두고, 각 실습병원에는 교육연구부장을 두며 자격 및 임기는 “직제 규정” 제9조 12항에 따른다.

② 각 부학장 및 교육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학장을 보좌한다.

1. 교무부학장 : 교원인사, 기획예산, 기초의학과정, 학생지도(의학과 4~6학년), 기타행정 업무
2. 임상의학부학장 :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임상수기실습센터 업무
3. 학생부학장 : 기본교육과정, 장학복지, 학생지도(의학과 1~3학년) 업무
4. 연구부학장 : 연구지원, 국내·외 대학원 교류 업무
5. 교육부학장 : 의학교육 총괄, 국내·외 대학 및 의료기관간 교류, 기타 대외협력 업무
6. 교육연구부장 : 각 병원 임상실습 학생교육 및 연구업무

③ 교육연구부장은 임상의학부학장 산하에서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학과장) ① 대학에 의학과장을 두지 않으며, 의학과 의 교무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생부학장은 의학과 1~3학년, 교무부학장은 의학과 4~6학년을 관장한다.

제5조(주임교수) ① 의학과 각 교실에는 1인의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단, 임상의학교실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주임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상의학교실의 주임교수는 의료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⑤ 주임교수는 대외적으로 교실을 대표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실별 교육과정의 계획 및 운영
2. 교실별 연구 및 기타 학술활동의 관리
3. 교실 내 교직원의 통솔

- 4. 교실 내 인사 상신
- 5. 교실별 조교, 인턴, 레지던트의 교육과 수련에 관한 사항
- 6. 기타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각 교실 주임교수는 주임교수회에 참석하며,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보직자의 의무)** ① 보직자란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 교육연구부장, 의학과장을 포함한다.
② 보직자는 전문성 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대학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은 부속병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의 보직자와 년 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과 및 교실)** ① 대학에는 의학과를 둔다.
② 의학과에는 학문분야별로 [별표1]과 같이 전공 교실을 둔다.

제8조(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담당 관련 교수) 원활한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장은 다음각호의 교수를 임명한다.

- ① 학년담임교수, 병원별 학생교육담당교수
- ② 학생지도교수 및 동아리지도교수
- ③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 병원별 과별 임상실습 담당교수
- ④ 각 교수별 역할은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및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에 따로 정한다.

- 제9조(행정부서 및 산하기관)** ① 대학에 행정부서로 교학팀을 둔다.
② 교학팀은 사무분장에 관한 내규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하되, 교육·교수·학생·연구·졸업 후 교육·입학·재정 등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업무분장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의과대학 산하에 임상수기실습센터를 둔다.
④ 의과대학 산하에 [별표 2]의 부설연구기관을 둔다.
⑤ 산하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의과대학 교수회)** ① 대학의 중요사항을 토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수회를 둔다.
② 회의는 학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주임교수회)** ① 주임교수회는 각 교실 주임교수들로 구성한다.
② 주임교수회 회의는 학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은 주임교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주임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의과대학 내부 규정의 제정과 개정
 - 2.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 장학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4. 교실 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
 - 5. 기타 의과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의과대학 운영위원회)** ①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장단(학장 및 부학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기타 학장이 지명하는 교수 약간 명,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제위원회)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별표 3]의 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각 위원회는 소속교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며,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학과에 설치하는 전공 교실

분야	교실 명		
기초의학교실	해부·신경생물학교실 약리학교실 병리학교실 의학교육학교실	생화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사회의학교실	생리학교실 기생충학교실 의학유전학교실
임상의학교실	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영상의학교실 치과학교실	외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피부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가정의학교실 진단검사의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응급의학교실

[별표 2] 부설연구기관

- | | |
|-------------------|------------------|
| 1. 뇌전증연구소 | 10. 의과학연구소 |
| 2. 청각평형 융합신경과학연구소 | 11. 의학교육연구소 |
| 3. 나노바이오재생의학연구소 | 12. 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
| 4.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 13. 춘천임상기초협동연구소 |
| 5. 마음신경의학연구소 | 14. 한림골격노화연구소 |
| 6. 보완대체의학연구소 | 15. 한림바이오아이텍연구소 |
| 7. 사회의학연구소 | 16. 한림신경의학연구소 |
| 8. 세포분화 및 노화연구소 | 17. 화상연구소 |
| 9. 폐알레르기연구소 | 18. 천연의약연구소 |

[별표 3] 제위원회

- | | |
|-------------------|---------------------|
| 1. 자체평가위원회 | 11. 학생지도위원회 |
| 2. 교육과정위원회 | 12. 장학위원회 |
| 3. 기본교육소위원회 | 13.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
| 4. 기초의학소위원회 | 14. 발전위원회 |
| 5. 통합교육소위원회 | 15. 의학과발전기금운영위원회 |
| 6. 임상실습소위원회 | 16. 의학과후원기금운영위원회 |
| 7.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 17.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
| 8.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 18. 교육평가위원회 |
| 9. 기초의학분야인사소위원회 | 19. 의료인문학소위원회 |
| 10.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 |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내규

제정 2022. 2.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전임교원, 겸직교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임교원은 의학교육학교실 소속으로 의학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전담하며, 타 교실에 겸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학교육 업무에 80% 이상을 할애하여야 한다.

③ 의학교육학교실의 교육 및 연구 영역에 따라 겸직교원을 둘 수 있으며, 한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의과대학 내 교실로서 의학교육 및 관련 학문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기본 업무로 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개선과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4조(주요업무) 의학교육학교실 교원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 교육 및 자문을 담당한다.

- 가. 교육과정 및 의학교육 관련 정책 개발
- 나. 교육과정의 개발, 실행 및 평가에 대한 지원
- 다. 교수법, 교육 평가에 대한 연구와 개발
- 라. 교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 마. 의학교육 실무와 연구를 위한 지원
- 바. 교육 관련 위원회 자문 및 지원
- 사. 교수와 학습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제5조(기타) 의학교육학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림대학교 및 의과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제정 2008. 1.18 개정 2015. 3. 1
개정 2008.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10. 3. 9 개정 2021. 3. 1
개정 2012.11.28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명칭)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및 연구실은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의학관 공동실험실 및 연구실 (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기존 각 교실 실험실에서의 연구 공간 부족의 해소 및 춘천성심병원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 공간 제공으로 연구의욕의 고취는 물론,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연구업적의 증대를 통한 의과대학 및 한림대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본 실험실 운영의 목적이 있다.

제3조(관리책임자) 실험실의 운영, 관리, 보유 비품 및 장비에 대한 제반 사항은 본 지침에 따라 의과대학장이 관리의 책임을 지며, 운영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무부학장을 운영책임자로 두고, 산하에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의과대학 직원 중에서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자격) 의과대학 교원 중 신청자에 한하며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 ① 의과대학 교원이 수주한 연구센터 및 프로젝트를 유치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② 연구 인력이 많아 기존 연구실에 모두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 배정하며, 연구비 액수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임상의학분야교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연구비 액수는 한림대학교 교원신분으로 한림대학교로 입금된 연구비의 실제 배정액으로 한다.
- ④ 신규 교원 임용으로 인해 공간을 부여해야 할 경우 신청에 상관없이 우선 배정한다.

제5조(시설사용기간) 실험실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및 계약해지 시 사용 공간을 반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서약서로 보관한다.

- ① 3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동년 8월 말일까지를, 9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익년 2월 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개별적으로 입고한 모든 장비 및 소모품 일체를 철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사용 공간) ① 실험실은 교원 1인당 실험대 1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의 신청에 따라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험대 2면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센터 유치의 경우 더 많은 실험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된 교원에게는 교수연구실 1실과 실험대 2면을 배정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사용료는 실험대 면당 600,000원(1개월 100,000원 기준)이며, 물품보관함이 없는 실험대의 사용료 또한 600,000원(1개월 10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②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험대 1/2면만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사용료는 1면 사용료 1/2에 해당하는 300,000원(1개월 5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③ 연구실은 1실당 1,200,000원(1개월 200,000원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원신규임용 등으로 연구실을 배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사용자는 재원에 따라 교내사용자와 교외 사용자로 구분하며, 교외사용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며, 이때 발생하는 부가세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재원	세금계산서	부가세
교내 사용자	학내(기초)연구소 인센티브, 교비 연구비	미발행	없음
교외 사용자	개인, 업체, 임상연구소 인센티브, 외부 연구비(재단 산하 병원, 산학협력단) 등	발행	10%

제8조(시설사용료의 집행) 시설사용료의 집행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9조(시설사용 신청 및 절차) ① 사용신청자는 사용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실험실 담당자에게 사전에 제출한다.

② 사용여부 결정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사용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용신청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후 입실할 수 있다.

제10조(장비반입 및 운용) ① 반입한 장비의 위치는 원칙적으로 실험실내 지정 실험테이블로 한정한다.

② 실험테이블 이외의 공간 사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의 반입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사용 위치는 실험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학과 6층 복도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④ 장비의 반입기간은 실험실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용자 부주의로 실험실 내부 시설 및 장비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 및 복구에 필요한 실비용을 부담한다.

⑥ 4항을 위반하여 장비를 철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규정의 부칙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⑦ 반입 장비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진다.

제11조(배양실 이용) ① 세포배양 및 바이러스 실험을 요하는 경우는 ‘사용신청서’의 ‘신청 공간’항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배양실 사용의 경우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계속 사용자에게는 기존 사용 공간의 우선권이 있으며, 공간에 대한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에 따른다.

제12조(사용제한) ① 각 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시설 사용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② 신규교수 임용으로 인한 공간부족 시 사용기한 종료 후 계속 사용 신청자 중에서 연구비 액수의 순서에 의하여 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비 액수에 대한 순서의 판정은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별로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공간에 대한 경쟁이 생길 경우에는 연구비 액수의 순서로 결정한다.
3. 교수신규임용에 따른 공간 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
4. 실험 장비 이외의 사무용테이블 및 비품보관함(Cabinet)의 반입을 제한한다.
5. 반입 장비를 철수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방치시점에서부터 장비 1건당 10,000원/1일씩 징수한다.
6. 사용기간 초과에 대한 사용제한
 - 가)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상하여 기존사용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또한,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에서 경고를 하고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3년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7. 사용료는 매년 6개월 단위로 납부하되, 입실 전달 말일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사용료 납부 계좌
 - ① 계좌번호: 별도안내
 - ② 예 금 주: 한림대학교
8. 실험실 내 설치된 창고 2실은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운영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무1-2-1~4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강사료 지급 지침

제정 2018. 7. 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의과대학 특강강사료, 1회성 특강료 등의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특강강사료) 의과대학에 전공자가 없는 법의학 교과목의 외부 강의자에게 특강 강사료를 1시간 당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1회성 특강료) 의료인문학 관련 교과목(의료인문학, 의학입문, 미래의학, 오거서세미나, 의료인문학세미나)은 특강 및 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므로, 외부 강사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만 한하여 1회성 특강료를 지급한다(1회 당 150,000원 이상, 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 항목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따른다.

제4조(명예교수 강사료) 한림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할 경우 시간강의로 기준의 1.5배인 1시간 당 75,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기타) 기타 교과목의 강사료는 대학이 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단, 명예교수 강의료 지급 기준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학년담임교수 업무 지침

제정 2019. 7. 1

개정 2019.12. 6

개정 2022.12.21

제1조(학기별 학생상담) 각 학년담임교수(이하 담임교수)는 학생을 상담한 후, 그 결과를 한림 BeCome 시스템에 기록한다. 특이사항 또는 주요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2조(학생생활지도)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성적부진 학생을 상담한 후 한림 BeCome 시스템에 기록한다. 특이사항 또는 주요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1>의 양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3조(유급생 관리) ①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유급학생과 상담한 후 <붙임 2>의 양식을 이용하여 그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② 담임교수는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한 후 그 결과를 <붙임 3>의 양식을 이용하여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4조(복학생 관리) 담임교수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알려 준 복학생과 상담한 후 그 결과를 <붙임 4>의 양식을 이용하여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5조(기타 사항) ① 담임교수의 학생 면담 등 학생지도 업무가 과중한 때에는 학생 부학장과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담임교수가 상담 결과를 학생부학장에게 서면 전달하는 경우 원활한 학생지도를 위해 교학팀 학생 업무 담당자를 참조인으로 한다.

제6조(관련 내규 및 지침) 담임교수는 학생지도시 의과대학 관련 내규 및 지침을 준용 한다.

1.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2.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3. “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4.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무1-3-2~2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20 학년도 __학기 유급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학년담임: _____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_____ (학번 _____)

- 유급사유:

- 향후 계획:

- 학생 요청사항

학부모 상담여부 확인	
-------------	--

< 붙임 3 >

20 학년도 __학기 유급생 학부모 상담 결과 보고서

20

학년담임: _____

1. 상담일시:
2. 상담대상자:
3. 상담내용

< 붙임 4 >

20 학년도 __학기 복학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학년담임: _____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_____ (학번 _____)

- 휴학 중 생활:

- 향 후 학업계획:

- 태도 등 변화사항 및 유의사항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 지원 지침

제정 2022. 3.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의 해외연수(연구연수, 임상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는 “의료원 교원 연수 규정”에 따라 의료원이 선정하고, 의과대학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 한다.

제3조(해외연수비 지원 및 의무) 해외연수비의 지원과 선정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정과목: 연구비/연구관리비
2. 세부항목: 인건비
3. 선정 시 연구계획서 제출, 연수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4.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연수기간 \ 지역	미국	유럽	아시아	기타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0	300	150	1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500	500	250	25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000	1,000	500	500
1년 이상	1,000	1,000	500	500

주1) 세금 및 간접비 포함

주2) 기부금액 또는 총당된 기부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5. 지급 시기: 연수 출국보고서 제출 후
6. 연수기간 중 1회 지급
7. 타 의료기관로 이직하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하여야 함.

제4조(재원)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 해외연수 지원목적으로 기부된 기부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대학 회계기간에 따른다.

제5조(기타) 기부자는 기부금을 원화로 기부하며, 기부금 중 잔여액은 의과대학 발전기금 회계에 적립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전부개정 2021. 6. 11

개정 2022. 2. 10

개정 2023. 7. 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교육부학장, 연구부학장, 임상의학부학장, 학생부학장
2. 의과대학 교학팀장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대학 기획처장
2. 한림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
3. 의과대학 동문회장
4. 의과대학 학부모 후원회장
5. 의과대학 교학팀 교직원 1명
6.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2명 이상
7. 보직을 맡지 않은 기초의학교수 2명 이상
8. 보직을 맡지 않은 임상의학교수 2명 이상

제3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단, 위촉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사명과 핵심가치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비전에 관한 사항
3. 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발전계획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과대학 발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의과대학 장기발전계획의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2015. 10. 1

개정 2020. 10. 5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 10

개정 2023. 5. 26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육내용과 여건을 자체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과 역할)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과 자료의 수집
2. 자체평가의 실시
3.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의 작성
4.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을 위한 지원업무
5. 지속적인 질향상 및 관리, 개선업무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이 위원회의 위원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무부학장, 학생부학장, 임상의학부학장, 연구부학장, 교육부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무부학장은 당기 자체평가연구 보고서 마감시한까지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평가인증 종료시점까지 위원직을 유지하며, 후임 교무부학장은 임시위원으로 참여한 후, 평가인증의 종료 후 위원직을 인계 받는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3개월 이상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학장은 결원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분과별로 간사를 1명씩 두며, 교육과정분과는 2명 이상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③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은 의학교육학교실에서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이 위원회에는 평가영역을 고려하여 사명과 성과 분과, 교육과정 분과, 학생평가 분과, 학생 분과, 교수 분과, 교육자원 분과, 교육평가 분과, 대학운영체제와 행정 분과, 지속적 개선 분과, 질향상·관리 분과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별 간사와 분과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위원회는 부여된 임무를 완료한 날에 자동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설치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 1/3 이상 또는 학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간사가 수시로 소집하여 운영한다.

④ 이 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집행을 위해 위원장은 간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규정의 개정)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후 학장의 허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내의 각 교실, 한림대학교 관련부서, 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또는 회무 처리결과는 분과위원장이 문서로 작성하여 사본은 별도 보관하고 정본은 의학교육학교실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내규

제정 2016. 12. 1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목적) 위원회는 교육의 질적 개선 및 학생 교육에 공헌한 교수의 공로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고자 매년 교육우수교수를 선정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의학교육학교실 전임교수, 교무부학장, 임상의학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혹은 임상 교수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의 추천 및 선정
2.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한다.

③ 회의 결과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7 조 (교육우수교수 선정 및 시상) 위원회는 교육우수교수 선정에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교육우수교수는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매년 전체 주임교수 회의에서 의과대학장 명으로 시상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6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교육우수교수 선정추천서

성명	
직위	
소속	
담당 교육과정	
추천 이유	

위 사람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0000학년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별지 제2호>

추천후보자 평가자료

1. 이력

1.1 기본 인적사항

1.2 경력 사항

- 교육경력 (학내외 활동, 대표 10개 이내)

2. 대표업적 및 실적목록

2.1 교육분야

- 최근 2년간 학기별 교육 실적 (담당교과목, 담당교과목 주요업무 (주임,책임,실무))
-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참고자료)

2.2 학생 평가분야

- 학생 교육(수업)평가 점수

2.3 최근 2년간 한림대학교 교육연수참여 실적

2.4 기타

교육우수교수 선정확인서

성명	
직위	
소속	
담당 교육과정	
선정 이유	

위 사람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 선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0000학년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수로 선정합니다.

20 년 월 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우수교수 선정위원회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1995.12. 1

개정 2016.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24. 2.2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6조에 따라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 기초교수회의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기초의학교원 업적평가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평가한 기초의학교원 업적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확정된 기초의학교원의 업적은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 신청 및 재심의) ① 의결 확정된 기초의학교원의 업적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 하고, 재심의 결과를 해당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날인 한다.

제7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 내규

제정 2022. 8.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장비기기 및 공간조정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학과장과 임상의학부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 학장이 임명하는 교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교무부학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과대학 장비기기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공간조정에 관한 사항
3. 의학관 6층 공동실험실 사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 내규

제정 1995.12. 1

개정 2016. 9. 1

개정 2021.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인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장과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기초의학교실의 추천을 받아 의과대학 기초교수회의에서 선출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 간사는 교무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의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3.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비밀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날인 한다.

제6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 2.16.

개정 2023.12.16.

개정 2024.11.14.

개정 202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의 과정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의 과정”이란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생선발, 교육환경 등 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시스템과 활동을 의미한다.
2. “모니터링”이란 교육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중재가 필요한 영역을 확인할 목적으로 그 주요 측면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통상적인 행정 활동을 말한다.
3. “교육평가”란 교육의 과정 전부 또는 일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수립한 평가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해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4. “메타평가”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평가, 교육평가 체제 등을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평가 등”이란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를 말한다.
6. “교육전문성”이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평가 등 의학교육을 포함한 교육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 경험 또는 그런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교육전문성의 활용) 교육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메타평가,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활용한 교육의 과정 개선 등을 할 때에는 교내외 교육전문성을 활용한다.

제2장 모니터링

제4조(모니터링 영역) 모니터링 영역은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한다.

1. 사명
2.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3. 학생선발
4. 교육과정
5.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비교과활동)
6. 학생활동
7. 교육환경

- 8. 졸업 후 진로
- 9. 기타

제5조(모니터링자료 수집과 분석) ① 자료의 생산·수집 주체와 방법, 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산·수집된 자료는 즉시 의학교육학교실로 전달한다.
③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에서 분석한다.

제6조(모니터링 보고서) ① 모니터링 보고서는 매년 8월 발간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보고서는 직전연도 1년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수록한다.
④ 모니터링 보고서는 당해연도 8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교육평가

제7조(평가모형) 평가모형은 맥락-투입-과정-산출 모형(context, input, process, and product model, CIPP model)으로 한다.

제8조(평가대상) ① 시기에 대한 평가는 2022년부터 통합교육과정(Phase 3시기, 2022년), 임상실습과정(Phase 4시기, 2023년), 기초의학과과정(Phase 2시기, 2024년), 기본교육과정(Phase 1시기, 2025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이후 6년마다 평가한다.
② 교육의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와 메타평가는 2026-7년간 하고 이후 6년마다 평가한다.
③ 2022-7년간 수행하는 교육평가의 일정은 별표 2와 같다.
④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한 교육의 과정의 영역에 대하여 부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계획서) ① 모든 교육평가는 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평가계획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평가계획서는 2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평가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 ① 평가보고서는 매년 2월 한 차례 발간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평가보고서는 2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재학생과 졸업생 코호트

제12조(명칭) 이 지침에서 말하는 코호트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졸업생 코호트(국문 약어 한림의대코호트; 영문명 Hallym Medical Students & Alumni Cohort; 영문약어 Hallym Medical Cohort, HMC)”라고 부른다.

제13조(관리주체) 코호트는 의학교육학교실이 구축하고 관리한다.

제14조(코호트자료의 수집과 분석) ① 코호트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다. 이때 사용하는 동의서 양식은 서식 1과 같다.

② 자료 생산·수집 주제와 방법, 시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생산·수집된 자료는 즉시 의학교육학교실로 전달한다.

④ 자료는 의학교육학교실이 분석한다.

제15조(코호트보고서) ① 코호트보고서는 매년 8월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하여 한 차례 발간한다.

② 보고서는 의학교육학교실이 작성한다.

③ 보고서는 8월에 개최되는 교육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교육의 과정 개선

제16조(결과환류) ① 의학교육학교실은 모니터링보고서와 평가보고서 등을 교학팀을 통하여 제위원회에 전달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은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개선활동) ① 제위원회는 교육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한다.

② 개선계획을 수립·실행한 위원회는 개선계획과 실적을 교학팀을 통하여 제위원회와 의학교육학교실에 전달한다.

③ 의학교육학교실은 개선계획과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모니터링 자료의 수집 주체와 방법, 시기

영역	지표	방법	관찰단위	수집주체	대상기간	수집시기
사명	사명 인지도	재학생 설문 교원 설문	개인	의학교육학교실	-	11월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졸업성과 인지도	재학생 설문				
	졸업성과 타당도	학적부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
	유급 또는 졸업유예 시기평가 평점					
학생선발	입학 종류	입학사정부	과정	교학팀	-	당해 3월
	전형 종류					
	수능시험 등급					
	출신고교					
	출신고교 소재지					
교육과정	과정명	과정계획서	과정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
	교과목번호					
	개설학년					
	개설학기					
	학점					
	과정계획서 유무					
	과정결과보고서 유무	과정결과보고서		과정책임/실무교수 → 교학팀		
	과정결과보고서 수업시수					
	교수학습방법별 수업시수					
	과정성과의 영역별 비율*					
	평가방법별 성적반영비율					
	형성평가 횟수					

별표 1. 계속

영역	지표	방법	관찰단위	수집주체	대상기간	수집시기
교육과정	학점	학적부	개인	교학팀	당해 1학기 당해 2학기	당해 8월 익년도 2월
	점수					
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비교과활동)	활동명	행정 자료	활동			교육활동 직후
	참여 학생 수					
학생활동	동아리 수	재학생 설문	개인	의학교육학교실	-	11월
	동아리명					
	동아리별 학생 수					
	가입 동아리 종류					
교육환경	가입 동아리명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학습 또는 수업					
	교수					
	학업 성취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동문회 자료				

별표 2. 2022-7년 한림의대 교육평가 시간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시기에 대한 평가						
기초의학과과정 (2기, 의학과 3학년)			●			
통합교육과정 (3기, 의학과 4학년)	●					
임상실습과정 (4기, 의학과 5학년~6학년)		●				
기본교육과정 (1기, 의학과 1학년~2학년)				●		
교육의 과정 전체에 대한 평가					●	●
메타평가					●	●
그 밖의 교육의 과정의 영역에 대한 평가	●	●	●	●	●	●

별표 3. 코호트 자료의 수집 주체와 시기, 방법

영역	지표	척도	방법	수집주체	수집시기	비고
사명	사명 인지도	5점 척도	재학생 설문	의학교육학교실	11월	
졸업성과와 시기성과	졸업성과 인지도					
	졸업성과 타당도					
	유급 또는 졸업유예	유무	학적부	교학팀	2월 및 8월	
	시기평가 결과	학점, 점수				
	졸업평가 결과					
	의사 국가시험 결과	합격, 불합격 점수	행정자료		2월	
학생선발	입학 종류	신입학 편입학	입학사정부	입학팀 → 교학팀	2월	
	전형 종류	수시 학교생활우수자 수시 지역인재 수시 농어촌 정시				
	수능시험 등급	과목별 등급				
	출신고교	고교명				
	출신고교 소재지	시군구				
교육과정	과정명	교과목명	학적부	교학팀	2월 및 8월	
	교과목번호	교과목번호				
	학점	학점				
	점수	점수				
	재시	재시 여부				

별표 3. 계속

영역	지표	척도	방법	수집주체	수집시기	비고
학생활동	가입 동아리 종류	본부 동아리 의과대학 동아리	재학생 설문	의학교육학교실	11월	
	가입 동아리명	동아리명				
교육환경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Dundee Ready Education Environment Measure (DREEM)
	학습 또는 수업					
	교수					
	학업 성취					
	학교 분위기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						
졸업 후 진로	근무기관	근무기관명	동문회 자료			
	근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직위	직위명				
	학력	학사, 석사, 박사				
	전공분야	전공 또는 진료분야				
인적사항	생년월일	19820515로 입력	재학생 및 졸업생 설문			- 학번은 연결 변수 - 졸업생 학번은 전 산상 학적부 자료 연결이 가능한 경 우로 국한
	성별	남녀				
	학번	학번				

서식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졸업생 코호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목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자료(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졸업생 코호트)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아래 자료는 통계 자료로 사용되며, 의학교육의 질 향상 연구를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식별정보를 익명화하여 연구자(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계획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학회와 학술지 등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정보제공자의 식별정보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학력, 각종 경력 및 자격증 등 학적부에 기재된 사항

입학 등 학생선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사명, 교육성과,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설문 결과 등

국가시험 결과, 진로선택 결과, 동문회 주소록 등을 통한 졸업 후 공개 자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영구 보존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교육2-1-1~10

20 년 월 일 성명_____ (날인 또는 서명)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10.24.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평가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학생평가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학생평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육목적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 ② 학생평가는 공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③ 학생평가는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④ 평가 후 재학습을 유도하도록 학생평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형성평가, 총괄평가) 학생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한다.

- ①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형성평가의 시기는 개별 강의 중간 또는 과정 중간에 시행하며, 평가 이후에는 학생 개별 또는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시행한다. 피드백이란 학생들의 시험점수나 등수 외에 시험문제 풀이, 학생의 현재 학업성취 도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② 총괄평가는 의도한 교육성과에 도달정도 확인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개별 과정 종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가내용) 학생평가의 내용은 교육목적의 지식, 술기, 태도를 포함한다.

제5조(평가방법) 의도한 교육성과와 교육방법에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양한 방법은 필기시험,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Computer based test, CBT), 구술시험, 증례토의, 임상술기 및 진료능력평가 시험(OSCE, CPX) 등이 있다.

제6조(시기평가, 졸업평가) 시기성과와 졸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기별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Phase 2(의학과 3학년)에는 기초의학종합평가, Phase 3(의학과 4학년)에는 통합교육종합평가, Phase 4(의학과 5, 6학년)에는 임상의학기본평가, 임상의학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제7조(재시험) 성적부진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학생은 각 과정의 최종 성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① 이의제기는 한림대학교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르며, 학생이 직접 담당교수에게 신청한다.
- ② 담당교수는 이의제기 결과를 학생에게 고지한다.

제9조(소명제도)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결정된 학생은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학팀은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최종 확정 전 학생에게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 ② 소명을 희망하는 학생은 고지받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작성하여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 ③ 학생의 소명 내용이 특정 과정과 관련될 경우, 이를 과정책임교수에게 고지하고, 과정책임교수는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그 외의 경우, 교육과정평가회의에서 심의한다.
- ④ 의과대학 교학팀은 유급, 졸업 유예, 제적 등이 결정된 학생, 학생지도교수, 학년담임교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시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한다.
- ⑤ 지도교수 및 학년담임교수는 유급이 결정된 학생과 면담을 시행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7. 11. 1.
개정 2019. 12. 1.
개정 2020. 12. 1.
전부개정 2022. 2.10.
개정 2024. 11.14.
개정 2024.12.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사명과 졸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의 원칙) 교육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① 성과 바탕 교육
 - 졸업성과, 시기성과, 과정성과, 단위수업성과 등 과정이나 수업에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한다.
- ② 학습자 중심 교육
 - 기존의 교수자에 의한 학습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③ 자기주도학습 강화
 -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수가 주도하는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학습 및 기타 활동 시간을 조절하여 자기계발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기초-임상 연계 교육
 - 모든 과정은 다른 관련 과정과 폭넓게 연계되어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환자 진료에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또한 선택과정도 개설하여 융합형 교육이 수행되도록 한다.
- ⑤ 인문학적 소양 함양
 - 의학 지식 외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평등의 원칙
 - 모든 교육과정은 평등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이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과정 구성) 교육과정은 졸업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Phase)로 구분하여 시기성과를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과정, 기초의학과

정,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각 과정의 강의를 큰 틀로 묶어서 수평 통합되도록 구성한다.

① Phase 1은 의학과 1학년과 2학년까지의 과정으로 보편타당성 있는 교양과목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의학을 배우기 이전에 의학에 필요한 기초과학, 기초교양, 인문사회적 소양, 미래의료환경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기 전에 영어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교육 이수 최소학점을 취득하여야 Phase 2의 기초의학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② Phase 2는 의학과 3학년의 기초의학과정으로 기초의학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며, 교과목 중심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첫 학기는 인체의 구조, 대사와 유전, 인체의 기능, 두 번째 학기는 인체와 질병 1, 인체와 질병2로 통합하여 교육한다. 기초-임상 간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Phase 3는 의학과 4학년의 통합교육과정으로 임상의학 이해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개념과 원리를 교육하며 진단학을 시작으로 호흡기학, 소화기학, 내분비내사학, 혈액종양학, 감염과 임상면역학, 여성생식의학, 근골격학, 신장비뇨기학, 순환기학, 신경과학, 외과총론, 감각기학, 정신과학, 성장과 발달, 가정의학 등 16개 통합된 임상과정을 교육한다. 신장학과 비뇨의학은 신장비뇨기학으로, 신경과학과 신경외과학은 신경과학으로,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피부과학은 감각기학으로, 심장혈관흉부외과학은 순환기학과 호흡기학으로, 외과각론은 내과학의 해당 분야로 각각 통합한다. 또한 기초의학을 연계한 기초-임상 연계학습, 임상실습 연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Phase 4는 의학과 5, 6학년으로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는 임상실습과정이며, 대학부속 춘천성심병원을 포함한 5개 교육 병원에서 실습을 받도록 한다. 임상실습 시작에 앞서 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임상과별 실습지침서에 따라 교육하고, 학생이 습득하여야 하는 기본 술기를 교육한다. 졸업 후 일차 진료가 가능하도록 환자진료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한다. 6학년 2학기는 진료역량개발, 임상의학종합평가과정을 구성한다.

⑤ 의료인문학은 기본교육과정의 오거서세미나에서 시작된 인문학적 소양이 의학과 전 과정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의학과 3학년은 의료인문학 1, 4학년은 의료인문학 2와 3, 5학년은 의료인문학세미나1, 2로 운영되며,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기초의학, 임상의학 전 과정에서도 의료인문학적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한다.

⑥ 해외임상실습 과정은 임상의학 통합과정을 마친 의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시행하여 국제적인 진료경험, 세계적인 의학계 흐름과 국제화 시대의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⑦ 선택실습과정은 의학과 6학년에 시행하며, 자기주도적 학습 및 자아개발을 위한 의료 및 사회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도록 한다.

⑧ 학생연구과정은 의학과 4학년에 의학연구입문과정을 시작으로 의학과 5학년에 연구멘토링 1과 2, 의학과 6학년에 심화연구멘토링 과정을 통해 의학연구의 기본

과정을 익히고 의사과학자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제4조(교육과정 운영) 기초의학, 임상의학, 의료인문학의 각 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교수학습법은 전통적 교과목 중심의 강의식 교육, 이외에 PBL, TBL, 증례토의, 선택실습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적극 활용한다.
- ② 교육과정 시작 전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교육과정 및 기초의학과정의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2개월 이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2. 통합교육과정, 임상실습과정의 책임교수는 과정 시작 2개월 이전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수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3. 운영계획은 전년도 교육과정 자체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강의주제, 강의형식, 강의일정 및 시간, 강의교수 배정, 외부강사 위촉 계획, 평가방법, 평가형식, 형성평가 여부, 시험문항 피드백 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임상의학분야 책임교수는 학기 시작 또는 교육과정 개시 3주 전까지 강의참여 교수가 작성한 단위수업계획서(학습성과)와 강의록(자료 포함)을 검토하고 피드백한다.
- ③ 개별 과정 진행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행한다.
 1. 과정별 강의일정 변경 등 운영계획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한다.
 2. 과정 중 학생들의 출석 및 결석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출석 부진학생을 면담한다.
 3. 단위수업별 강의평가를 시행한다. [붙임1-1], [붙임1-2]
 4.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피드백한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강의하는 경우 1회 이상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 ④ 과정 후 학생평가 : 학생평가지침을 따로 정한다.
- ⑤ 성적 관리 및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책임교수는 학생평가(시험) 후 문항분석을(난이도, 분별도 등) 시행하여 출제교수들에게 피드백하며, 학점을 입력하고 관리한다.
 2. 책임교수는 과정 종료 8주 이내에 교육과정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회의에서는 교육과정의 단위수업 학습성과/계획서, 강의록을 포함한 교육자료와 시험문항분석을 검토하고 차기 년도 개선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다. [붙임 2-1], [붙임 2-2], [붙임 2-3]
 3. 책임교수는 교과과정별 자체평가보고서를 과정 종료 10주 이내에 교학팀을 통해 교육과정위원장과 교육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자체평가보고서 내 학생면담 보고서에 성적 하위 10% 학생들을 면담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보고서에는 회의(워크숍) 일시, 장소, 참석 교수 명단, 개선 계획, 증빙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기 말 교육과정평

가회의에서 요약하여 보고하며, 다음 학기 교육과정 개선회의에서 보고한다.
[붙임 2-1], [붙임 2-2], [붙임 2-3]

제5조(교육 전문성) 대학은 의학교육학교실에 소속되어 있는 의학교육 전임교원 등 교육 전문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맞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과 교수법, 학생평가방법의 개발과 개선, 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_____년 (기초/임상) 통합교육과정 강의평가

※ 이 평가조사서는 교과목의 전반적인 장·단점을 조사하여 여러분 후배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익명으로 작성하여 주시되 **반드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명: _____)

※1-5점 척도

- 5점; 매우 그렇다.
- 4점; 그렇다.
-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항 목	평 가				
1. 이 과정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가?	5	4	3	2	1
2. 학습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5	4	3	2	1
3. 학습목표의 양이 적절한가?	5	4	3	2	1
4. 본인은 제시된 학습목표의 어느정도를 공부하였는가?	100%	75%	50%	25%	0%
5. 스스로 연습과 복습을 하였는가?	5	4	3	2	1
5-2. 위의 문항에 1, 2를 선택하였다면 그 이유는?					
6. 강의 시간은 적절한가?	5	4	3	2	1
7.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5	4	3	2	1
8. 강의 시간 중 교육자료 및 참고문헌 소개는 충분한가?	5	4	3	2	1
9. 자율학습을 위한 추가 자료는 적절한가?	5	4	3	2	1
10. 이번 과정 중 유익했던 강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11. 이번 과정 중 부족했던 강의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12. 실습과정 중 개선,요구사항은 무엇인가?					
13. 필기시험의 문항수는 적절한가?	5	4	3	2	1
14.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5	4	3	2	1
15. 시험문제가 학습목표와 일치하는가?	5	4	3	2	1

이번 과정의 전체적인 의견(장점, 단점, 개선방향등)을 적어주십시오

[붙임 1-2]

_____년 임상실습과정 강의평가

임상 실습 설문지 - 1학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진솔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명	한림	강동	강남	동탄	춘천	
실습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임상실습 스케줄이 체계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실습 시작시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구체적으로 실습 시간 및 계획을 제공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실습담당 전공의는 효과적인 교수자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교수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임상실습지침서에 제시된 필수 임상수기 중 시행된 비율은?	100%	80%	50%	20%	0%	<input type="checkbox"/>
7.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환자의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input type="checkbox"/>
9. 환자에 대한 신체 진찰을 단독 또는 감독하에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input type="checkbox"/>
10. 실습과정 중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_____년 임상실습과정 강의평가

임상 실습 설문지 - 2학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과정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진솔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명	한림	강동	강남	동탄	춘천
-----	----	----	----	----	----

실습과	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 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해당 없음
1. 임상실습 스케줄이 체계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실습 시작시에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구체적으로 실습 시간 및 계획을 제공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실습담당 전공의는 효과적인 교수자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교수는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임상실습지침서에 제시된 필수 임상수기 중 시행된 비율은?	100%	80%	50%	20%	0%	<input type="checkbox"/>
7.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환자의 인터뷰를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input type="checkbox"/>
9. 환자에 대한 신체 진찰을 단독 또는 감독하에 직접 해보았다.	5명 이상	4~5명	2~3명	1명	0명	<input type="checkbox"/>
10. 실습과정 중 개선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붙임 2-1]

_____년 기초의학교육과정별 자체평가

과정명: _____

항 목	평 가				
	5	4	3	2	1
과정의 진행					
1. 수업내용(chapter)의 순서와 편성은 잘 되었는가?	5	4	3	2	1
2. 수업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과정의 내용					
3.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연계가 적절히 되었는가?	5	4	3	2	1
4. 과정에 맞는 실습 교육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5	4	3	2	1
5. 증례토의는 적절하였는가(증례토의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가)?	5	4	3	2	1
6. 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교육자료(강의록, PPT 등)					
7. 교육자료의 형식, 순서, 내용이 강의록 제작 지침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ex: 학습성과목표, 참고문헌, 글자 크기, 글꼴 등)	5	4	3	2	1
8.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 및 이해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9. 교육자료 분량은 적절하였는가?(특히, PPT 파일)	5	4	3	2	1
10. 교육자료 수준(일차진료의 수준)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1. 제시된 참고문헌은 학생들의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학습평가(시험)					
12. 과정(Course)수업계획서에는 학습평가 방법이 분명히 기술되어있는가?	5	4	3	2	1
13. 다양한 방법(필기/실기시험, 과제, CP, 출석 등)으로 진행되는가?	5	4	3	2	1
14. 피드백 시간을 수업계획서에 편성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	3	2	1
15.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6.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가 피드백되고, 개선안이 마련되었는가?	5	4	3	2	1
자율학습					
17.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 1-5점 척도

- 5점; 매우그렇다.
- 4점; 그렇다.
- 3점; 보통이다. (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 2점; 그렇지 않다. (개선해야 한다.)
-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18. 학습성과목표가 일차진료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관련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붙임 2-2]

자체평가 및 교육과정평가 보고서 양식

1. 통합교육과정 과목명: _____

2. 과정성과

학생들은 ○○○ 과정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 1.
- 2.
- 3.

(지적 기능 및 기술)

- 1.
- 2.
- 3.

(태도)

- 1.
- 2.
- 3.

3. 교육과정 운영계획(수업계획서 첨부 및 참여교수 명단)

(예시)

소속	교실(과)	교수명
강남	○○○교실(과)	○○○, △△△, □□□, ○○○
	△△△교실(과)	
강동	○○○교실(과)	
	□□□교실(과)	
동탄		
춘천		
한강		
한림		

4. 교육내용 분석

- 강의주제 점검
- 강의록 점검(단위수업별 학습성과, 참고문헌, 내용의 수준 및 분량 등)

5. 학생평가결과

- 문항적합도 분석(난이도, 분별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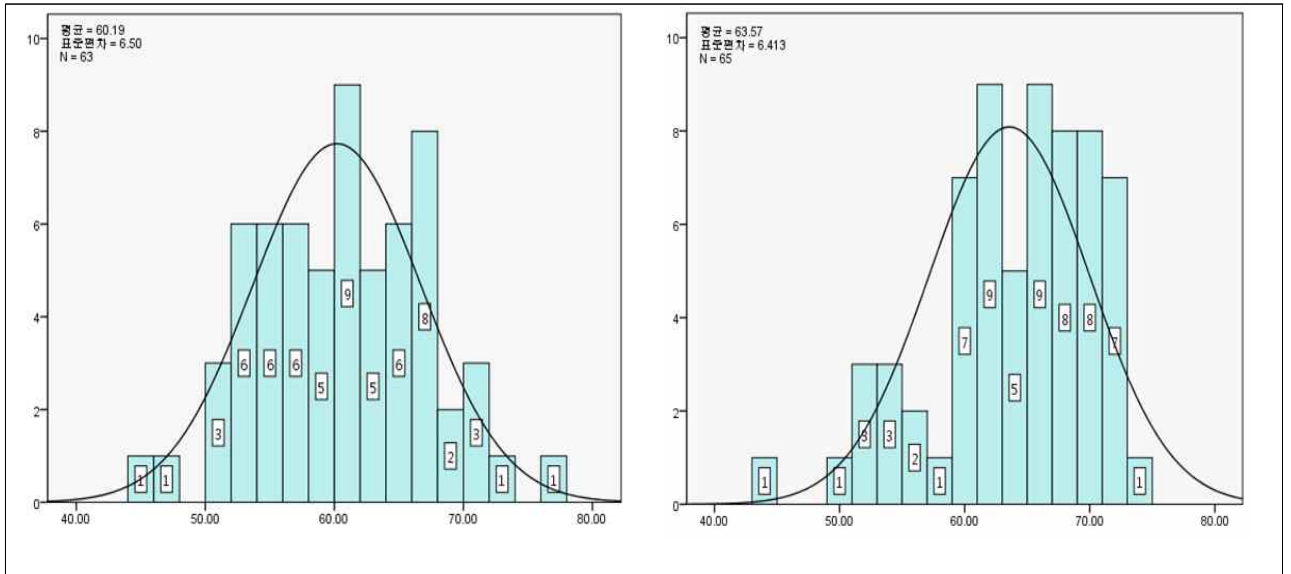
(예시)

	2016년	2017년	2018년
출제문항 수	84	80	
원점수 평균	60.19	63.57	
원점수 표준편차	6.50	6.413	
원점수 범위	45~76	44~74	
난이도	0.72	0.79	
분별도	0.19	0.19	
100점 환산 평균	71.66	79.46	
100점 환산 표준편차	7.739	8.016	

- 시험문항 분석: 문항별 난이도, 분별도, 오답지매력도 등

- 시험성적 분포(평균, 최고-최저, 등급별 학생수)

(예시)



-하위10% 학생 명단 및 면담기록
(학생 명단 보고서 양식 참조)

과목명		○○○		책임교수명	○○○
학번	이름	석차	면담일	면담내용 (상세히 기록)	
	○○○	57			
	○○○	58			
		59			
		60			
		61			
		62			
		63			
		64			
		65			

-성적평가
: 성적반영 비율

6. 학생 강의평가 분석
(예시)

과목명	응답수	문항1	문항2	평균
○○○				

- 기타 주관식 의견 분석

7.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자체평가회의)

(과정 내 자체 학생설문조사 결과 포함)

※ 1-5점 척도

5점; 매우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항 목	평 가					
	5	4	3	2	1	해당없음
과정의 진행						
1. 수업내용(chapter)의 순서와 편성은 잘 되었는가?	5	4	3	2	1	
2. 수업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과정의 내용						
3.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었는가? (예;생리학-내과)	5	4	3	2	1	
4. 과정에 맞는 실습 교육은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5	4	3	2	1	
5. 과정에 맞는 기본임상술기 교육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는가?	5	4	3	2	1	
6. 증례토의는 적절하였는가(증례토의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가)?	5	4	3	2	1	
7. 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교육자료(강의록, PPT 등)						
8. 교육자료의 형식, 순서, 내용이 강의록 제작 지침 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가?(ex: 학습성과목표, 참고문헌, 글자 크기, 글꼴 등)	5	4	3	2	1	
9.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 및 이해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0. 교육자료 분량은 적절하였는가?(특히, PPT 파일)	5	4	3	2	1	
11. 교육자료 수준(일차진료의 수준)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2. 제시된 참고문헌은 학생들의 학습에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학습평가(시험)						
13. 과정(Course)수업계획서에는 학습평가 방법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가?	5	4	3	2	1	
14. 다양한 방법(필기/실기시험, 과제, CP, 출석 등)으로 진행되는가?	5	4	3	2	1	
15. 피드백 시간을 수업계획서에 편성 하고,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5	4	3	2	1	
16.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는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7. 교수별 시험의 난이도와 분별도가 피드백되고, 개선안이 마련되었는가?	5	4	3	2	1	
자율학습						
18. 자율학습 시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9) 학습성과목표가 일차진료의 수준을 벗어나거나 관련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 실습일 경우 실습내용이 없는 chapter가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 의사국가시험 실기문항(OSCE-32개/CPX-54개) 중 통합교육과정에서 시행한 항목이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2) 강의록이 형식에 맞지 않고, 의학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Yes, No)
있다면, 구체적인 chapter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3) 전년도 대비 개선된 사항

24) 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8. 차기 년도 교육과정 개선 계획

9. 대학 건의사항

[붙임 2-3]

_____년 임상실습과정별 자체평가

과정명: _____

항 목	평 가				
	5	4	3	2	1
1. 실습 교육의 편성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2. 실습 내용은 학습성과목표와 일치하였는가?	5	4	3	2	1
3. 실습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4. 임상술기 교육은 충분하였는가?	5	4	3	2	1
5. 실습과정의 전체적인 기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6. 실습지침서는 제작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5	4	3	2	1
7. 실습 수기수첩은 제작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5	4	3	2	1
8. 실습지침서 및 수기수첩의 의학용어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9. 실습 지침서 및 수기수첩의 활용도는 어떠한가?	100%	75%	50%	25%	0%
10. 실습담당교수의 역할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1. 실습 표준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5	4	3	2	1
12. 실습 평가 방식은 적절하였는가?	5	4	3	2	1

13. 임상실습교육과정 중 개선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관식)

※1-5점 척도

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그러나 약간의 개선이 필요하다.)

2점; 그렇지 않다(개선해야 한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전년도 대비 개선된 사항

기타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건의사항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제정 2022. 2.10.

개정 2023. 2.16.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른 교육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의 과정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2. 교육평가 체제 수립과 운영, 개선
3. 교육의 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평가 결과 제공
4. 교육의 과정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자와 학생의 피드백에 대한 조사와 분석, 대응
5. 학생과 졸업생의 수행 능력 분석
6. 그 밖에 교육평가를 위하여 학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학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학장
2. 교무부학장
3. 학생선발소위원회 위원장
4. 기본교육소위원회 위원장
5. 기초교육소위원회 위원장
6. 통합교육소위원회 위원장
7. 임상실습소위원회 위원장
8. 의학교육학교실 전임교원
9. 의과대학 교학팀 학사업무 담당 직원
10. 대학 교무처장
11. 대학 교육혁신센터 센터장
12. 의과대학 학생 대표 1명
13. 의과대학 교학팀 교직원 대표 1명
14. 의과대학 교원 1명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보직 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 내규

제정 2020.12.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과대학 의료인문학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인문학 교육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교육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및 임상교수 약간 명,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성과 설정
3. 의료인문학 교육과정 평가
4. 기타 학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5.11.16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라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장은 통합교육과정 별 책임교수 1명과 실무교수를 1명 이상 임명한다.

②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와 실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은 임상의학부학장,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통합교육과정 책임 및 실무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임상의학부학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을 심의하고, 기초의학 통합교육과정은 기초의학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의 권한)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는 통합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이 있다.

1. 과목별 강의시간 수를 고려한 강의주제 및 강의담당교수 배정 및 외부강사 위촉
2. 교과목의 과정성과 설정 및 실습 계획의 수립
3. 시간표 작성 및 시험문제 출제, 채점, 학점 부여 등 제반 학습평가
4. 교과목 운영을 위해 필요 시 강의 교수의 소집 및 교과목 회의 진행

제6조(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의 임무) ① 통합교육과정 책임교수는 아래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과정성과 및 수업성과의 설정
2. 강의록 제작 및 시간표 제작

3. 외부강사 위촉 등 강의 담당 교수 선정
 4. 시험 문제 출제, 채점, 학점부여 등 학점 기준관리
 5. 강의 관련 교과목 회의의 주재 및 진행
- ② 통합교육과정 실무교수는 책임교수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② 각 통합교육과정 내의 회의는 책임교수의 권한 하에 진행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5.11.16

개정 2019.10. 1

개정 2020.11.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1.24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기초의학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기초의학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교수 약간 명,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의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를 겸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의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초의학 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2. 기초의학 교육과정 성과 설정
3. 기초의학 교육과정 평가
4. 기타 학장 및 교육과정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제정 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7.12. 1
개정 2014. 3. 1 개정 2020.11. 1
개정 2015.11.16 개정 2021. 3. 1
개정 2016. 9.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본 위원회는 기본교육과정의 수립·진행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 하고,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학생부학과장과 교무부학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및 임상교수 약간 명, 교양교육 관련 교원 약간 명,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 ②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과장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기본교육과정 전반적인 기획 수립 및 개발
- 2. 기본교육과정 성과 설정
- 3. 기본교육과정 평가
- 4.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

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
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7.12. 1
개정 2014. 3. 1 개정 2019.10. 1
개정 2015.11.16 개정 2020.11. 1
개정 2016.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한림대학교 “교과과정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학과 교육과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교무부학장, 의과대학 교육과정 위원회 내규 제6조에 근거한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초 혹은 임상 교수 약간명과 직원대표,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를 겸한다.)

② 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기획 수립, 개발 및 평가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④ 위원이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간사를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며,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한다.

③ 회의 결과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위원회(기본교육소위원회, 기초의학소

위원회, 통합교육소위원회, 임상실습소위원회, 의료인문학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2. 각 소위원회의 구성은 소위원회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전임교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17. 8.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및 임상의학분야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의과대학에서 행해지는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

②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의 경우, 기초의학분야교원은 한림대학교의 규정을 따르며 임상의학분야교원은 의료원 규정을 준수한다.

③ 연구윤리 교육은 의학교육학교실 주관 신입교수워크숍 및 연구윤리관련 특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④ 동물실험연구자교육 및 생명윤리위원회(IRB) 교육은 한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제정 2022. 2.10.

개정 2023.12.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의과대학 연구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의과대학 교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무) ① 연구실 책임자는 학부생이 한림대학교 “연구실 안전 관리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② 학부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학부생은 연구실 한림대학교 “안전 관리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나. 학부생은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시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부생은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시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라. 학부생은 매학기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 연구실 출입 학생은 출입명부에 날인을 해야 한다.

③ 학부생은 2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연구시설 사용을 불허한다.

제4조(사고 발생 시 조치) ① 학생은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고 대응 및 사고 상황별 대처 요령은 “한림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③ 학생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대응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5조(손망실 처리) ① 학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1항 외에 발생한 망실 또는 파손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한림대학교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연구3-2-1~2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2022. 8.18

개정 2023. 9. 5

제1조(신청 대상자)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또는 의료원 산하 병원의 비전임교원과 공동연구로 참여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의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학생)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신청서([서식 1]) 제출
 2. (의과대학 교학팀) 보고 및 위원회 개최
 3. (위원회) 신청자의 적합성 평가 및 대상자 선정
- ② 선정 기구: 의과대학 운영위원회(교직원 제외)
- ③ 선정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지(SCI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해외학회 발표자로 참가 예정인 학생
 2. 국제학술지(SCI급 학술지)에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해외학회 발표자로 참가 예정인 학생으로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의 적격 심사(연구참여도, 기여도 등)를 통과한자
- ※ SCI급 학술지: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2도 2항 [별표 2])

제3조(지원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안)	비고
지원금	주저자	○ 유럽·미주 : \$2,000 ○ 아시아 : \$1,000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포함 (증빙 제출)
	공저자	주저자의 70% 지원	

제4조(지원금 지급 절차) ① 지원금의 지급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의과대학 교학팀은 의료원 교원지원팀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 요청
2. 의료원 교원지원팀은 지급 대상사 품의 후 대학에 법인 전입금 지급
3. 의과대학 교학팀은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

제5조(결과 보고) ① 결과 보고는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학회참가보고서([서식 2]) 제출 및 정산
2. 교신저자: 본인 책임 하에 지원 받은 학생을 (공동)주저자로 한 SCI급 논문 제출
3. 보고처: 의과대학 교학팀

제6조(대상자의 수업) 학술연구 지원 대상자의 수업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사안별 심의하여 결정한다.

※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34조(공결처리) 9 ⇨ 기타 상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담당교수가 인정한 경우

연구3-2-2~2

이 제정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결	담 당	팀 장	부학장	학 장
재				

해외 학회 참가 신청서				
학생	학과		학년	
	학번		이름	
논문 지도교수	소속병원		교실명	
	직위		성명	
논문발표 계획	논문제목			
	논문의종류	원저()	종설()	증례() 기타()
	발표방법	주저자() 공저자()		
	발표방법			
	학술지명	주) 논문게제 예정 학술지		
	학술지종류	SCI()	SCIE()	기타()
참여 학회	학회명칭			
	개최장소			
	초청기관			
	발표방법			
	학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여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학술지명	주) 참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학술지종류	SCI()	SCIE()	기타()
20 . . .				
		신청인	(인)	
		논문지도교수	(인)	
		학과장	(인)	

- 유 첨 : 1. 발표논문초록 1부.
 2. 학회 초청장 및 프로그램 1부.
 3. 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서류 1부.

[서식 2]

결	담 당	팀 장	부학장	학 장
재				

해외 학회 참석 결과보고서			
학과		학년	
학번		이름	
학회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학 회 명			
학회장소			
<p>■ 해외학회 기간 중 주요 발표내용(별첨가능, 발표 사진 포함)</p> <p>■ 최신의학정보 및 주요사항(별첨가능)</p> <p>■ 건의사항</p>			
20			
참가학생		(인)	

- 유 첨 : 1. 발표논문초록 1부.
 2. 항공료 영수증(경비지원자에 한함) 1부.
 3. 기타 영수증 각 1매.

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제정 2024. 1. 11

개정 2024.11. 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및 의과대학의 제반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연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학생연구 분야) 의학과에는 아래와 같은 교과과정을 둔다.

과정	세부 교과과정
연구멘토링 심화연구멘토링 기타 선택지도	연구멘토링: 의학과 5학년 1, 2학기의 1:1 매칭 연구지도 심화연구멘토링: 의학과 6학년 1학기의 1:1 매칭 연구지도 기타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인정하는 멘토-멘티 연구지도

제3조(학생연구 선발) ① 의과대학 학생은 의학과 5학년 임상실습 기간 동안 연구멘토링을 통한 멘토-멘티 1:1 매칭을 통하여 반드시 학생연구와 관련된 역량습득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② 멘토-멘티 매칭의 경우에는 실습이 예정된 해당 임상실습병원의 멘토와 1:1 매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멘토-멘티 매칭은 의과대학 연구부학장의 권한으로 시행한다.

④ 심화연구멘토링은 의학과 5학년 연구멘토링 과목 이수 이후, 담당 멘토-멘티의 협의에 따라 의학과 6학년 1학기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연구역량 습득을 위한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심화연구멘토링의 과목개설 최소수강인원이 전공과목 폐강 기준인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총장 승인을 위한 공문 발송을 통하여 의학과 6학년 1학기에 과목개설이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제4조(연구멘토링 지침) ① 의과대학 학생은 의학과 재학 기간 동안 연구멘토링 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② 연구관련 교육과정은 주제선정, 문헌조사, 연구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 해석과 토론, 결과 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통하여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③ 연구멘토링은 실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특정요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구멘토링 시간은 해당실습이 있는 과에 실습 직전의 방학기간을 통하여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공지를 완료한다.

④ 연구멘토링에 대하여 정해진 일시에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멘토와 멘티의 협의를 통해 임상실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

⑤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 연구멘토링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점검을 시행한다.

제5조(연구멘토링 운영) ①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각 병원의 수련교육부장, 의학과 5학년 학생교육담당교수와 함께 학기당 1회 이상의 연구멘토링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② 학생들은 연구멘토링의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연구멘토링 진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학년대표 및 각 병원 학생대표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③ 연구멘토링 주임교수는 학기당 1회 이상의 학생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 각 병원 수련교육부 및 학생교육담당교수에게 전달한다.

제6조(학생연구지원) ① 본 내규는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학생연구와 관련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연구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학생의 학술연구지원 대상은 임상실습기간부터 의학과 6학년 2학기 졸업 이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학생의 해외학회 주저자 발표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마련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해당 멘토교수는 학생의 발표에 대한 증명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멘토링이 끝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④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연구관련 발표는 학생의 국내외 학회 구연 및 포스터 주저자 발표에 한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학교육연구재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멘토링 주임교수의 선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이외의 학생연구 지원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과 동일하게 멘토교수는 학생의 발표에 대한 증명서류 및 연구결과물을 교학팀으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의 학생연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학생연구 윤리) ① 학생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

② 학생연구 윤리는 “의과대학 연구윤리 지침”을 따른다.

제8조(학생연구의 결과물) ① 연구멘토링: 연구계획서

② 논문은 해당논문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의과대학 학생이 소속으로 증명이 되는 연구논문으로 제한한다.

③ 구연(포스터)발표의 경우에는 해당 학회의 구연(포스터) 발표의 주저자 명단이 확인되는 발표 및 발표자료(ppt, pdf 등의 파일)로 제한한다.

④ 학회로부터의 상장 등의 추가적인 연구결과물은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전달하여 연구결과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제정 2013. 3. 1

개정 2014. 5. 1

개정 2015.11.16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라 임상실습소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 위원은 임상의학부학장, 병원별 교육연구부장, 학생담당교수,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로 구성한다.
- ② 병원별 학생담당교수와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는 교실별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① 본 위원회는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을 표준화하고, 학생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임상의학부학장으로 한다.

-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임상실습책임교수의 임무) 임상실습책임교수는 아래의 주임교수의 업무를 보좌한다.

1. 과정성과 및 수업성과의 설정
2. 임상실습지침서, 임상수기수첩 검토 및 개정
3. 임상실습과정 관련 회의 및 시험 등 참여
4. 시험문제 출제, 채점, 학점 부여 등 담당교수 업무 보좌
5. 실습 관련 교과목별 회의 진행 및 병원간 실습교육 표준화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학기 1회 이상 소집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

제정 2015. 9.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 학생의 건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무) ① 학생은 의과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안전의무) ① 학생은 “의과대학 학생건강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상실습학생의 경우 각 실습병원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보건진료소) ① 학생의 간단한 처치 및 진료는 대학의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를 활용한다.

② 진료소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진료소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자문의)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단 내 병원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비용) ① 한림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림대학교가 지원한다.

②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③ 학생이 재단 내 병원에서 진료 받을 경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지급 내규”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7조(보고의무) ①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인지한 최초발견자는 즉시 의과대학 교학팀을 거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상실습 중에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교육담당교수는 임상의학 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임상의학부학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생활지도 지침

제정 2013.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 학생 중 성적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성적부진 학생이라 함은 성적평점평균이 2.5 이하의 학생을 의미한다.

② 부적응 학생이라 함은 지도교수, 학년담임 및 의과대학 보직교수의 판단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③ 학생생활지도라 함은 성적부진 학생과 부적응 학생에 대하여 면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돌봄을 의미한다.

제3조(절차와 방법) ① 학년담임교수는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2.5 이하인 학생을 학기 초, 학기 중 상담을 해야 하며, 필요시 지도교수의 추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5 이하인 학생과 유급에 따른 일반휴학 후 복학을 하는 학생은 방학 중 또는 복학 전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지침

제정 2019. 3.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의과대학에서의 성폭력과 기타 부당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② 성폭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예시는 한림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1”과 같다.

③ 이 지침에서 “부당행위”란 성폭력을 제외한 신체 및 언어폭력, 직간접적 인격 모독 및 집단 따돌림 등을 뜻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 ①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처리중인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 및 처리주체) ① 성폭력 등 부당행위의 피해자, 목격자 또는 상담교수는 학생부학장에게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 동아리 지도교수 등 신뢰할 수 있는 교수에게 상담 또는 신고할 수도 있다.

② 성폭력 등 부당행위는 학생부학장이 총괄하여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안에 따라 최초 인지교수,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 동아리 교수 등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및 절차) 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② 제3자의 상담/신고 등을 통해 성폭력 등 부당행위를 최초로 인지한 교수는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신고/인지보고서(붙임 1)를 학생부학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피해자 상담/신고 등을 통해 성폭력을 최초로 인지한 교수(이하 최초 인지교수)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에 따라 즉시 학생부학장에게 통보한다. 학생부학장은 이를 학장에게 즉시 보고 후 인권센터에 신고한다.

④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성년일 경우, 피해자 상담 시 해당 사항에 대해 인권센터또는 학생부학장에게 통보할 것임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 학생부학장 등 관련부서에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권리(이후에라도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등 기타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를 설명한 후 재차 해당 사항의 보고를 권유한다.

⑥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관련 학교기관에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을 한 경우, 피해자로 부터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의 개시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확인서(자유양식) 등을 반드시 수령한 후, 관련 사실을 자세히 서면(자유양식) 으로 작성, 서명 보관한 후 학생부학장 등에 통보 또는 신고 없이 종결한다.

⑦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에 통보를 원할 시, 즉시 센터에 신고 후 학생부학장 등에 통보 또는 신고 없이 종결한다.

⑧ 최초 인지교수는 피해자가 인권센터 통보는 원하지 않으나, 학생부학장에게 통보를 원할 경우,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신고/인지보고서(붙임 1) 및 피해자 동의서(붙임 2) 등을 첨부하여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또는 신고한다.

⑨ 학생부학장은 즉시 사실여부 파악, 학장에게 서면보고한 후 학생지도위원회 개최, 인권센터 신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시행한다.

제7조(기타) ① 학생부학장은 매년 교육과정평가워크숍 시 본 지침과 관련된 사항 및 처리 지침에 대해 각 교수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한림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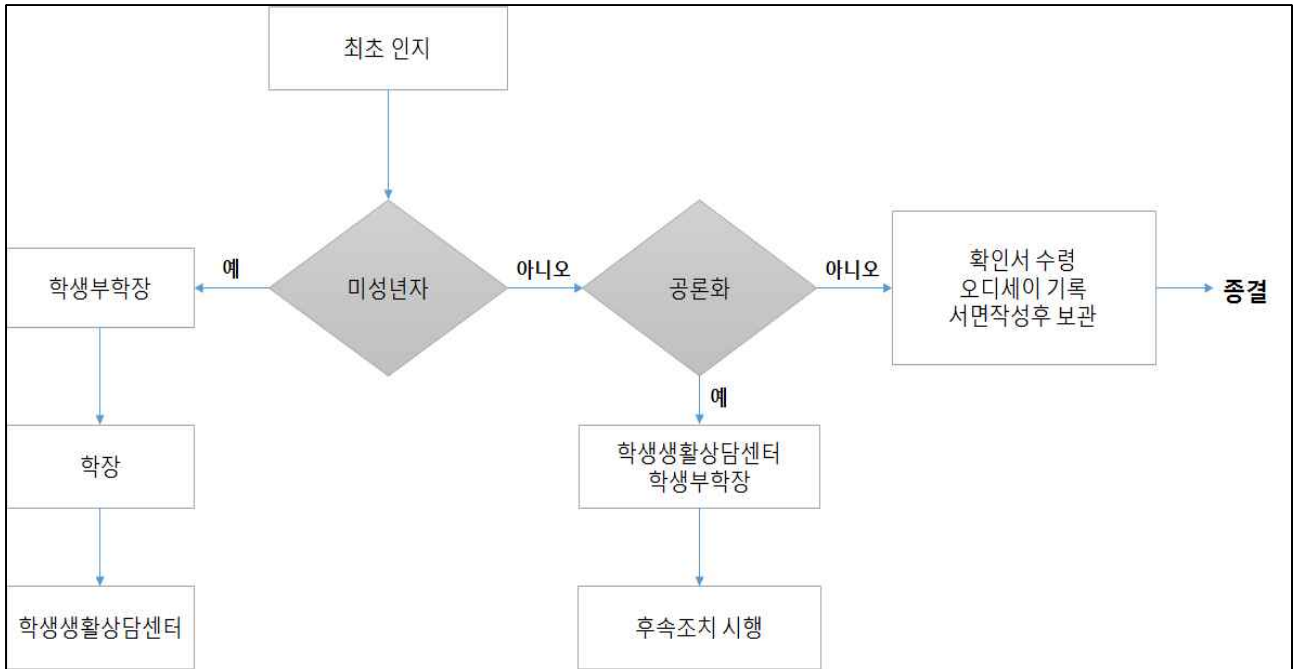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그림 1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성폭력 등 부당행위 처리 절차



성폭력 등 부당행위 신고/인지 보고서

20

신고/보고자: _____

1. 인지일시:

2. 관련자:

3. 인지내용

< 붙임 2 >

피해자 동의서

본인은 아래와 같은 성폭력 등 부당행위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하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1. 피해일시:
2. 가해자:
3. 상담내용

20

신고자/피해자: _____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행동 규범 Hallym Medical Student Code of Conduct

>> 학습윤리

-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 수업에서 대리출석을 하지 않는다.
-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협동학습 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 위조 및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 실습 중 성실과 책임감

- 실습, 강의 및 세미나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에 온전히 참여한다.
- 실습 중 지침을 준수하고 실습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 실습 중 청결을 유지하고 정해진 복장 규정을 따른다.

>> 부적절한 행동

- 타인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 성별, 나이, 종교, 소득수준, 민족 등을 이유로 타인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 환자와의 성적 접촉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음주로 인해 수업과 임상 실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복용하지 않는다.

>> 진료역량 계발과 유지

- 우수한 의학지식과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 진료 역량의 제한을 인지하되 바람직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환자 및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자신이 의사가 아닌 학생임을 분명히 밝히고, 역량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교수, 상급자 또는 동료 학생이 제공하는 교육적 피드백을 경청하고 수용한다.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에 대한 존중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행동한다.
- 교수, 동료 전문가, 행정직원, 동료 학생과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동료 학생 및 전문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낸다.

>> 환자 존중과 비밀유지

1. 환자를 존중하고 존엄성을 지킨다.
 - 환자 또는 보호자 앞에서 환자를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동료 학생 및 의료인, 혹은 타인에게 환자를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실습 시 실습과 무관한 부적절한 신체 진찰을 하지 않는다.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이유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2. 환자의 비밀 유지

- 환자의 의무기록을 발설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 공공장소 및 사적인 모임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등하게 환자 정보 보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 학습이 아닌 목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지 않는다.

3.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행위의 목적, 방법 등을 환자에게 설명한다.
- 의료 행위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환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도록 돕는다.
- 환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를 존중하여 신중하게 행동한다.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제정 2017. 8.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개정 2024.12.31

1. 선이수 대상 및 시기

- 1) 의학과 4학년 1학기 유급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4학년 2학기 과정을 선이수 할 수 있다.
- 2) 임상실습 교육과정(의학과 5, 6학년 과정)은 선이수 할 수 없다.
- 3) 의학과 3학년 과정은 1학기 과목의 이수 여부가 2학기 과목 이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이수 할 수 없다.

2. 선이수 학기

- 1) 정규 학기와 동일하게 모든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2) 2학기 모든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차기 년도 4학년 2학기 과정은 휴학 처리된다.
- 3) 2학기 모든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취득하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차기 년도 4학년 2학기에 취득해야 한다.
(선이수 학기 성적이 유급에 해당할 경우, B학점 이상인 과목은 차기년도에 성적 대체가 가능하다)
- 4) 정규 학기와 동일한 유급 기준을 적용한다.
- 5) 선이수 학기 유급도 통산 유급 횟수에 포함된다.

3. 등록금

- 1) 선이수 과정은 정규학기에 포함되므로 이수 학점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제정 지침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유급학생 관리 운영 지침

제정 2013. 9.10.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개정 2023. 8.2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락 혹은 평락으로 유급한 의과대학 학생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학팀 직원, 교수진 및 학부모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급 학생(졸업 유예 학생 포함)이 발생되면 최소한 각 호와 같이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과대학 교학팀은 유급 사실을 지도교수, 학년 담임교수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한다.
2. 유급 학생의 지도교수와 학년 담임교수는 유급 결정 후 학생과 상담하고, 그 결과를 <붙임 2>의 양식에 기록하고(유급사유, 향후 계획, 학생의 요청사항 등)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3. 학년담임교수는 필요시 학부모와 상담하고 결과를 <붙임 3> 양식에 기록하고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4. 지도교수는 추가적으로 최소한 두 차례 (중간 점검 및 학기 시작 전) 상담하고, 그 결과를 한림 BeCome에 입력하고 필요시 학생부학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5. 수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복학 전 캠퍼스라이프 카운슬링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참여한 학생은 참여 확인증을 발급 받아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6.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임상 또는 기초의학교실에 연구학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20 학년도 __학기 유급생 면담 결과 보고서

20

학년담임: _____

1. 면담일시:
2. 면담대상자:
3. 면담내용

성명: _____ (학번 _____)

- 유급사유:

- 향후 계획:

- 학생 요청사항

학부모 상담여부 확인	
-------------	--

*의과대학 학년 담임교수 업무지침 양식 <붙임 2> 활용

< 붙임 3 >

20 학년도 __학기 유급생 학부모 상담 결과 보고서

20

학년담임: _____

1. 상담일시:
2. 상담대상자:
3. 상담내용

*의과대학 학년 담임교수 업무지침 양식 <붙임 3> 활용

의과대학 의학과 편입학 운영 지침

제정 2017. 12. 1

개정 2022. 2.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림대학교 학칙” 제27조 및 “편입학 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의학과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학과 편입학) ① 의학과 편입학은 일반편입학으로 실시하며 의학과 1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② 편입학생은 의예과를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원자격) 의학과 편입학의 지원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이거나 교육법에 의거하여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적대학에서 72학점 이상 이수하였으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4조(입학전형)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필기 고사 성적, 면접고사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졸업 기준) 의학과 편입학생의 졸업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학기 : 8학기 이상
2. 취득학점 : 의학과 전공필수 150학점, 총취득학점 150학점 이상
3. 총성적평점평균 : 2.00 이상 (전적대학 성적 제외)
4. 졸업종합시험 합격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제정 2019. 5.27.

개정 2021. 3. 1.

개정 2022. 2.10.

개정 2024.11.1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따른 학생선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재상 설정
2.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등 입학정책 수립
3. 위촉사정관 추천 및 교육
4. 입학정책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입학정책에 대하여 학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교무부학과장 학생부학과장, 대학 본부 입학팀장으로 한다.
- ④ 위촉위원은 의과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의과대학 교학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보직 임기로 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업무 제외 및 회피) ① 당해연도 학생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과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위원은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위원에서 해촉한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위원회 업무에서 빠지거나 위원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장학위원회 내규

제정 2012. 9. 1 개정 2020. 5. 7

개정 2017. 9. 1 개정 2021. 3. 1

개정 2016. 4. 1 개정 2022. 2.1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과대학에서 지원하는 모든 장학금은 이 내규를 따른다. 다만, 별도의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을 갖는 기탁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부학장, 교무부학장과 3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학기별로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은 의과대학장학금과 교내,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의과대학장학금은 발전기금장학금과 후원회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③ 교내장학금은 한림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장학금신청서(지정양식)를 의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 장학생 선발은 소득분위, 현재 학생생활상황, 학년대표의 추천, 별표 1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9조(장학생의 교체) 선발된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결격사유, 개인적인 포기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경과전 장학생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수혜자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1조(이중지급 금지) ①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장학금 지급 유효기간) ① 장학금지급결정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 내규

제정 2012.10.11

개정 2016. 4. 1

개정 2017.12. 1

개정 2019. 7. 1

개정 2022. 2.10

개정 2022.12.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학생부학과장과 임상의학부학과장, 학년담임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중 학장이 임명하는 교원과, 직원대표 및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직원대표는 간사로 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학생대표 임기는 대표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생단체 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3. 학생 복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지도교수, 학년담임교수, 동아리지도교수) ① 학생의 학습, 생활, 진로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교수를 둔다. 학생지도교수 당 적정 수의 학생을 배정하여 학생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생지도교수는 전임교수 중 학장이 임명하며, 그 활동내용을 한림BeCome 시스템에 기록한다.

② 학년별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학년별 1인 이상의 담임교수를 둔다. 학년담임교수는 해당 학년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며, 임상실습 학생은 각 병원별 학생교육담당교수가 학년담임교수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학생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아리별로 동아리지도교수를 둔다. 동아리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의 학생활동을 지도, 감독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과 학장의 승인을 통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학생소명 소위원회, 부당행위 조사처리 소위원회, 비공개 학생지도 소위원회

등)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학생위원은 제5조 4호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회의 참석을 배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제정 내규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제정 2008. 3. 4.

개정 2017. 7.2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학교 기금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을 위하여 적립된 재산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학과 6층 공동실험실 사용료
2. 기부금
3. 소액기부금
4. 교내외 출연금
5. 기타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운영주체) 기금의 운영주체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되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의학과 6층 공동실험실 고가장비 구입 및 설치 장비 수리
2. 의학과 6층 공동실험실 관련 운영 경비
3. 의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4. 각종 학술행사의 개최 및 행사 지원
5. 기부 목적에 따른 사업
6. 기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
7. 소액기부금은 의학과 교원의 연구 환경 개선, 의학과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③ 기금은 원금과 과실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 보직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재원 형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 선정, 평가 및 기금 배정,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4. 의과대학 관련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소액기부금에 의한 지원 사업 계획 및 승인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제정 1991. 7.19 개정 1994.11. 9
개정 1998. 6.19 개정 2005. 3. 1
개정 1992.11.20 개정 1996. 6.19
개정 2003. 6.20 개정 2007. 3. 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한림대학교 예산과 기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중 의과대학생의 수학 및 연구, 학생 자치활동에 도움을 주며 기타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회(이하 “이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후원회라 한다.

제3조(소재) 이 회의 사무소는 편의상 의과대학 교학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사업의 지원은 의과대학 의학과에 한한다.

1. 학생수학 및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학교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기념사업
4. 의사국가시험대비 경비 지원
5. 장학사업

제5조(학장의 동의) 이 회의 사업계획은 학장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제2장 조직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의과대학 학부형(보호자)과 졸업생
2. 명예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 의하여 추대된 자.

제7조(임원 및 직무)

1. 이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인
 - 나. 부회장 2인
 - 다. 이사 100인 이상
 - 라. 감사 2인
 - 마. 고문 2인 이상
2.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리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5. 임원의 자격은 이 회의 회원으로 한다.
6. 후원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에 각 학년별 학부모회를 두고, 학년별 학부모회의 회장과 간사는 후원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7. 이회의 전임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임명 구성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 될 때까지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 상임이사회의로 구분한다.
 - 가.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의 정원은 임원을 포함, 임원의 2배 이상 참석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총회는 이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이 접수된 회원은 참석으로 본다.
 - 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6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임장이 접수된 회원은 참석으로 본다.) 단, 출석인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인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출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라.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5월, 11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 마. 회장은 이사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바. 상임이사회는 학년별 회장단 및 전체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사. 상임이사회는 년4회 분기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가. 규약의 제정 및 개폐
 - 나. 임원의 선출
 - 다. 사업의 계획 수립
2. 총회는 전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상임이사회의에서는 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이 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 대학의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재정

제13조(재정)

1.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는 년회비 360,000원(월 30,000원 기준) 이상으로 하되, 연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 3. 찬조금 납부자는 그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200만원이상으로 하며, 찬조금 납부자에게는 월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

- 1. 이 회의 예산의 집행은 회장이 한다.
- 2. 다음 사항은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가. 제5조(학장의 동의)에 의거 학장의 의견으로 결정된 사업
 - 나.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위임한 사업
- 3. 본 회의 경리 업무는 한림대학교 재무팀에 위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이 회의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한림대학교(일송학원)의 재산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 규약은 199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좌조치) 본 회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본회의 발기인 16명이 납부한 3,300만원은 본 회의 찬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4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약은 200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정 충당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 1. 이전의 의과대학후원회 규약에 따라 조성된 기금(금리기증식 기금)은 개정 이전의 규약을 적용하여 반환할 수 있다.
 -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월 회비는 종전 규약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약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재정 충당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규정)

1.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월 회비는 종전의 규약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약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제정 2008. 8. 1.

개정 2024.11.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학교 기금 관리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기금”이라 함은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을 위하여 의과대학후원회를 통하여 적립된 재산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의과대학후원회를 통하여 조성된 학부모의 기부성 후원금
2. 적립된 후원기금에 의한 금융 이자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운영주체) 기금의 운영주체는 의과대학 교학팀이 되며,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기금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과대학 의학과 전용 기숙사 건립에 있다.

③ 기금은 상기 ②항의 기숙사 건립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목적 이외에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의학과 학생 장학금 지원
2. 의과대학 학생회 활동 지원
3. 의과대학 동아리 행사 및 비품 지원
4. 방학기간 중 연구학생 활동 지원
5. 의사국가시험 경비 지원
6. 의과대학후원회 운영 경비 지원
7. 의과대학 인정평가 활동 지원
8. 기타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사업

④ 기금은 원금과 과실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후원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을 포함한 의과대학 보직교수 2명을 학교 측 위원으로, 의과대학후원회 전·현직 총회장 3명을 의과대학후원회 측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과대학후원회장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재원 형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 선정, 평가 및 기금 배정,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4. 의과대학 관련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기금은 의과대학의 관련 위원회에 위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제정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개정 세칙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2025학년도 의학통합 6년제 시행 관련 경과조치) 2025학년도 1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사물함 운영 지침

제정 2019. 4. 22

개정 2023. 1. 25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의과대학 사물함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조직) ① 관리책임자는 의과대학장으로 하되, 제반 업무는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한다.

② 사물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물함 대여 및 반납 업무는 의과대학 교학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사물함 배정)

1. 사물함 배정(총 318개)

구분	A 구역 (3201강의실 앞)	B 구역 (TBL Room 앞)	C 구역 (동아리방)	합계
사물함 수	138	150	50	318

2. 사용절차

구분	세부 내역	비고
신청자격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방법	1학기초 대표학생에게 신청	- 학년별 지정된 구역 사용 - 배정된 구역내 대표학생 자율 배정
반납시기	2학기 종료시점 일괄 반납 처리	- 학기 종료후 1주일 후부터 사물함 정리 - 사물함 내 모든 물품 폐기

3. 기타사항

가. 의과대학 사물함은 의과대학 재학생에 한하여 사용 가능

나. 학년별 지정된 구역을 사용하며, 사물함이 부족한 지정구역을 제외한 희망 자리 배정

다. 사물함은 오픈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키가 필요한 경우 교학팀에서 원본키를 빌려 복사 후 사용가능(비용: 본인 부담)

라. 반납 시기 이후 분실 혹은 폐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바. 사물함 훼손 시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 칙

이 제정 지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 인사 규정

개정 1989. 6. 1	개정 2000. 3. 2	개정 2009. 3.12	개정 2018. 7.18
개정 1990. 2. 7	개정 2003. 1.24	개정 2012. 3. 8	개정 2019. 3.15
개정 1991. 4.10	개정 2003. 8. 4	개정 2012. 8. 9	개정 2019.10.17
개정 1991.10.10	개정 2003.10.23	개정 2013. 8. 2	개정 2022. 2. 9
개정 1994. 3.21	개정 2004. 1.27	개정 2014. 5.30	개정 2022. 8.26
개정 1995.11. 9	개정 2004.11.18	개정 2014.12. 8	개정 2023. 9.12
개정 1996. 6. 4	개정 2005. 4.28	개정 2015. 1.12	개정 2024.10. 2
개정 1998. 8.13	개정 2007. 1. 4	개정 2015.11. 2	
개정 1999.10.14	개정 2008.12.11	개정 2018. 2.26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한림대학교 교원의 임용, 승진, 복무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원의 직무구분 및 직위)** ① 전임교원은 정년제 전임교원과 비정년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정년제 전임교원은 일반전임교원, HK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 외국어전담교원,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구분한다.
- ②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이 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강의전담교원, 외국어전담교원,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사이에 상호 직무변경을 할 수 있다.
- ③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 ④ 제1항의 전임교원 외에 강사,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원, 연구교원, 겸임교원, 산학교원 등을 들 수 있다.
- ⑤ 연구업적이 탁월한 정년제 전임교원은 특훈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⑥ 본교의 연구진흥, 대외적 위상제고 등 본교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년제 전임교원과 국내외 저명학자는 연구석좌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3 조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의과대학(의학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원 및 비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4 조 (교원의 자격)**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규임용 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 제 5 조 (교원의 임용)**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등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 ② 교원은 해당 융합단장, 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업적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되 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자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임용 한다.
- ③ 교원은 직무구분과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만료일까지 승진하지 못한 정년제 전임교원은 퇴직하여야 한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임용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그 학기의 말일까지 임용한다.

직 위 \ 직무구분	정년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교수	5년	정년 ¹⁾	
부교수	2년	7년 ²⁾	5년
조교수	2년	-	6년

주) 1.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1-5 ~ 2 인사 행정

주) 2.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정년제 전임교원은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 1. 부교수 : 7년
- 1. 조교수 : 8년

⑤ 교원이 “정관”에 따라 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은 직위별 최대임용기간, 승진소요최소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겸직금지) 교원은 이 대학교의 본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인정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 7 조 (교원의 사직 및 정년) 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희망(이하 ‘의원면직’이라 한다.) 하는 교원은 사직 예정일 30일 전에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직원’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② 전 항의 의원면직을 하려는 교원은 ‘교원 명예퇴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에 도달한 학기의 마지막 일로 한다. 다만, 이 대학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교원업적평가) ① 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원 업적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 9 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장 신규임용

제 10 조 (절차)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절차는 따로 정한다. 다만, 교원의 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용직위) 신규임용 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탁월한 교육경력 또는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용계약)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며 신규임용 계약기간 내에는 승진임용 할 수 없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에 관한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 13 조 (경력연수) ①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직위별 최소경력연수(교육 및 연구)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최소경력연수는 따로 정한다.

임 용 직 위	최소경력연수
조 교 수	4년
부 교 수	10년
교 수	15년

② 경력연수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연구업적)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연구업적의 최소점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 및 부가조건은 따로 정한다. 다만,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시에는 연구업적 최소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용직위	평가대상 기간	연구업적최소점수
조 교수	최근 3년 이내	200점 이상
부 교수	최근 6년 이내	인문사회계열 : 1,250점 이상 자연공학계열 : 1,550점 이상
교 수	최근 11년 이내	인문사회계열 : 2,300점 이상 자연공학계열 : 2,800점 이상

제 4 장 승진임용

제 15 조 (절차 및 계약) ① 정년제 전임교원은 직위별로 정한 경력연수와 교원 업적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 합계가 승진에 필요한 기준에 도달하면 제5조 제2항의 임용절차를 거쳐 승진된 직위로 재계약 하여 임용 할 수 있다.

② 승진임용을 원하는 교원은 본 규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신입교원의 재임용 절차 및 일정에 준하여 승진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진임용심사대상에서 제외 하며 해당 교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③ 교원의 승진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성과약정, 급여 등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현 직위의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승진에 필요한 자격이 구비되면 승진된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⑤ 휴직 중인 교원은 승진할 수 없다.

⑥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6 조 (시기 및 기간) ①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승진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승진된 직위의 계약기간으로 임용한다.

제 17 조 (기준) ① 정년제 전임교원의 직위별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준경력연수는 다음과 같다. 경력연 수 산출 시에 전적대학에서의 해당 직위 재직연수를 경력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승진직위	현직최소연수	총경력연수
부 교수	조교수로 6년	10년
교 수	부교수로 5년	15년

② 정년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직위별 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및 업적평가 최소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평가기간은 승진임용예정일의 직전일부터 기산한다.

승진직위	평가기간	업적평가최소점수
부 교수	6년	1850
교 수	5년	1600

2.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연구업적 점수, 산학협력업적 대체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부서인 경우 해당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 한다.

③ 부교수로 승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3배 이상을 충족한 경우

2. 세부전공 최상위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혹은 국제적 학회의 학술상 수상 등 국제 수 준에 달하는 연구역량을 갖춘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논문이나 저작을 발표한 교수는 융합클러스터·단과대학(스쿨)교원업적평가 위원회 및 교원업적평가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⑤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직위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무처가 주관하는 ‘수업컨설팅’과 산학

4-1-5 ~ 4 인사 행정

협력단이 주관하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컨설팅’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승진심사에 탈락한 교원 및 미신청한 교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업적평가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제 5 장 신임교원의 재임용

제 18 조 (절차) ① 신규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신임교원의 재임용(본 장에서는 ‘재임용’이라 칭한다)’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전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재임용 심의 신청을 제5조 2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임면권자에게 제청하고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심의를 할 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전항의 통지 사항에는 재임용 거부처분을 불복하고자 하는 교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재임용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⑧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 조 (시기 및 기간) ①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재임용 직위의 계약기간으로 임용한다.

제 20 조 (계약) 교원의 재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조건 등이 포함된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성과약정, 급여등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의신청) 재임용 심사결과의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재임용심사 이의신청서를 소속 융합클러스터 융합단장 또는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필요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2 조 (기준) ① 신규임용 정년제 전임교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위	평가기간	업적평가최소점수	연구영역최소점수	
			인문, 사회	자연, 공학
교수	5년	1,600	840	980
부교수	2년	500	200(100)	
조교수				

주1) 연구영역 최소점수 중 ()의 필수기준 점수는 계열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KCI등재지(주/교신) 이상 학술논문
2. 자연, 공학계열 : SCI급(주/교신) 학술논문

주2)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 및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 교원은 학문분야의 학술논문으로 다음의 부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2. 직위별 필요 편수

직위	필요편수
부교수	주/교신 2편
조교수	주/교신 1편

- 주3) 산학협력 업적 점수는“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연구실적 대체비율에 따라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소점수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주4)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①학술논문, ②저작에 한정한다.
- 주5) 신규임용 교수의 연구업적 점수는 별표1의 2.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 및 3. 승진임용 공통 기준을 따른다.

- ② 임용기간을 계약으로 정하는 교수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③ 본 조에 따른 재임용을 하려는 교원은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무처가 주관하는 ‘수업컨설팅’과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산학협력·연구활동 컨설팅’을 각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재임용 기준 미 충족자에 대한 조치) 제22조(기준)의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 6 장 정년보장임용

제 23 조의 2 (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
2. 제17조 3항에 따라 부교수로 승진하는 교원
3. 신규 임용된 교원 중 제2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재임용 심의 받는 교수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는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의 연구실적 등을 심사한다.

③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보 직

제 24 조 (보직자의 임면) 보직은 이 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정한 직위에 교원으로 보임 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면 하고 이사장에 보고한다.
2. 처장, 부속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부학장, 원장보, 학장보,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등은 총장이 임면하고 기타의 보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25 조 (보직의 임기) 교원으로 보임된 보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중도해임) 총장은 필요에 따라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제 8 장 보수 및 호봉

제 27 조 (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급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8 조 (호봉 및 승호) ① 교원의 호봉은 특1호봉, 특2호봉, 가1호봉 내지 가10호봉, 1호봉 내지 26호봉으로 하며, 임용시의 호봉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승호의 종류는 정기승호, 조기승호, 가호봉승호로 구분하며 승호를 원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한 기간에 “승호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호를 할 수 없다.

③ 교원의 승호심사는 “교원 업적 평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한다.

④ 교원의 승호에 필요한 기간 및 세부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단, 융합클러스터 소속 교원 중 대표 겸직부서가 특례조항을 적용받는 부서인 경우 해당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29 조 (조기승호)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는 조기승호를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제 30 조 (가호봉승호) 1호봉으로 승호 후 2년이 경과한 교수 중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수는 가호봉으로 승호 할 수 있다.

제 9 장 복 무

제 31 조 (복무) 교원은 이 대학교의 봉직자로서 교육,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를 담당하여야 하며, 교원 관련 법령 및 학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2 조 (부서간 겸직근무) 총장은 이 대학교의 부서간 상호지원이 필요한 교원에게 겸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 33 조 (타교출강) ① 교원의 타교출강은 학기당 1개 대학에 한정하여, 1주당 6시간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타교출강을 원하는 교원은 개강 2주전까지 타교출강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0 장 보 칙

제 35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일송학원 정관”, “사립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 36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부 칙

- ① 1.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임용규정, 교직원복무규정은 폐지된다.
- ②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규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 시행이전에 겸임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⑩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경우 199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⑪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업적심사내규를 적용한다.
- 3. (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 제2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재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내규를 적용한다.
- 4. (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교원은 해당 임용기간 만료시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내규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 ⑫ 이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 가. 1997년 9월 1일 이전에 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의 재임용은 승진임용 당시 정년보장임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교원업적평가절차를 생략하여 정년보장 임용한다.
 - 나. 2001년 4월까지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2001학년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이 개정규정에 따르되 교원업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육업적은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취득한 점수(1998, 1999 및 2000년 전기) 평균에 따른 연도별 점수와 현행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취득한 평균점수 중에서 유리한 쪽을 택하여 그 값에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도의 곱으로 한다.
- 2) 연구업적은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전 기간의 업적을 2000년 6월 30일 이전의 업적은 종전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를, 그 이후는 개정된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평가점수와 합산하되 재임용에 요구되는 연구업적의 최저점수는 전임강사 100점, 조교수 150점, 부교수 200점으로 하고 승진임용은 승진직위별로 조교수 200점, 부교수 300점, 교수 350점으로 한다. 단,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의 50% 이상은 전공분야 학술저작, 전국규모의 국내 및 외국 학술논문 또는 국제학술논문 점수로 하되 승진 직위별로 조교수 100점, 부교수 150점, 교수 200점으로 한다.

라. 2002년 9월 이후의 모든 교원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개정 규정을 따르되 교육업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의 평균값을 인사발령 기준 전 기간에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구업적은 이 개정규정에 따라 재평가하여 적용한다.

마. 전적대학 경력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업적은 이 대학교 부임 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점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연구업적은 이 개정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바. 제 27 조에 따른 교수의 승호는 2003년 9월부터 시행한다.

3.(규정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업적심사내규 및 교원재임용심사내규는 폐지한다.

⑮ 1(시행일자). 이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제16조의 승진임용 시기에 관한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승진시기의 변경에 따라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현직최소연수가 1개월 이내에서 부족될 경우에는 승진직위에 필요한 총경력연수가 충족된 경우에 한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기준경력연수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나. 2002년 8월31일 이전에 연구교원, 강의교원, 겸임교원, 객원교원 등으로 임용 또는 위촉된 교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용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 2002년 8월31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은 “재직중인전임교원에대한 임용내규”를 별도로 제정하여 종전의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⑯ 이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⑰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⑱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직위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학년도 3월 1일자 신규임용 교원부터 소급적용하여 직위 재산정 후 직위 변경 등록한다. 이 경우 직위 산정 기준일은 신규임용일로 한다.

4-1-5 ~ 8 인사 행정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임용된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에 따른 승진 및 재임용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최초 심사시점의 기준(별표1)에 따라 재심의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17조(승진임용 기준) 및 제20조(재임용 기준)를 따른다.
- ③ (종전 인정 연구실적의 재산정) 승진, 재임용, 승호와 관련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연구업적 점수는 이 개정규정 및 2012년 5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재심의하여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기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심사기준은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되 승진 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최초 심사시점의 기준(별표2)에 따라 재심사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승진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 17조(승진임용 기준)에 명시된 해당 승진시점의 기준만을 따른다.
- ③ (종전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이에 따른 재임용 후에는 본 규정에 명시된 해당 재임용 관련 규정만을 따른다.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최초 심사시점의 기준(별표2)에 따라 재심사하되 2014년 3월 1일 자 재임용 대상자부터는 본 규정 제20조(재임용기준)에 명시된 해당 재임용시점의 기준만을 따른다.
- ④ (경과규정)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의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본 규정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6년으로 변경된 것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⑤ (종전 전임강사의 경력인정) 본 규정의 시행일 전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의 재직경력에는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제23조 제2항 신규임용교원 재임용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규정은 2012년 9월 1일자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승호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 제28조의 승호 및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2013년 3월 1일 승호, 정년보장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23조(재임용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제1항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2016년 3월 1일자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2016년 2월 28일 이전 재임용자는 종전규정의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부 칙

4-1-5 ~ 10 인사 행정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이 개정규정의 직전 개정규정(2013.11.01.) 경과조치를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승호 중 25호 내지 7호로 승호하는 사람 및 조기승호 대상자 : 2015년 3월 1일자 승호 예정자부터
 - 2. 정기승호 중 6호 내지 1호로 승호하는 사람 : 2015년 9월 1일자 승호 예정자부터
 - 3. 가호봉으로 승호하는 사람 : 2016년 3월 1일 승호 예정자부터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28조 제 4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이 개정규정의 직전 개정규정(2013.11.01.) 경과조치를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22조는 2014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자 승진, 신입교원 재임용 대상교원부터 적용한다.
- ② (동일직위 재임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면직을 유예한다. 단, 2013년 4월 11일 개정 전 '교원 인사 규정' 제23조에 따라 면직이 유예된 교원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직한다.
- ③ (현재 동일직위 재임용자에 대한 특례)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동일 직위로 재임용 된 교원은 임용계약일 까지 임용한다.
- ④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에 미치지 못한 부교수에 대한 특례) 현재 임용계약 상 임용기간이 본 규정 제 5조 제4항에 미치지 못하는 부교수는 동 조가 정하는 기간까지 임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2항은 2015년 8월 31일 이후 명예퇴직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7조 '별표'1의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은 2016년 9월 1일 승진대상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1-5 ~ 12 인사 행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승진임용 및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 17조 제 5항 및 제 22조 제 3항은 2022년 9월 1일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승진임용기준

1.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기준

분 야	인문/사회	자연/공학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년	6년
업적평가 최소점수	1850	1850
연구영역 최소점수	940	1100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500	500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 KCI등재지 이상 논문 4편 ○ 사회: KCI등재지 이상 논문 3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급 논문 4편
부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SCI급 논문1편(공동저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은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주/교신 3편

2. 부교수의 교수 승진기준

분 야	인문/사회	자연/공학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5년	5년
업적평가 최소점수	1600	1600
연구영역 최소점수	840	980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점수	400	400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I등재지 이상 논문 3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급 논문 4편
부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I급 주교신논문 1편 또는 공저 논문 2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신 SCI급 논문중 최소 1편 이상은 JCR 상위 50%이내(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제외) ○ 데이터사이언스학부 교원은 JCR 분류 Mathematics,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Interdisciplinary Applications, Statistics & Probability에 해당하는 학술논문 주/교신 2편 추가

3. 승진임용 공통기준

- 1) 인문계열의 경우 200점 이상의 단독전문학술저작은 “KCI등재지 이상 기준점수”에서 200점으로 인정함.
- 2) 인문사회계열의 부가조건 (SCI급 논문 게재의무)는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이를 대체하여 인정함.

4-1-5 ~ 14 인사 행정

구분	부가조건	공통기준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추가 제출편수
조교수→부교수 승진	‘SCI급 공동저자 논문 1편’인 경우	“연구영역 최소점수” 보다 100점 이상을 더 발표	○ KCI이상 주교신 3편
부교수→교수 승진	‘SCI급 주교신 저자 논문 1편 또는 공저 논문 2편’인 경우		○ KCI이상 주교신 4편(인문은 3편) ○ SCI급 공저 1편 및 KCI급 주교신 2편

- 3) 언어청각학부, 간호학과 소속 교원은 주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논문 3편을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의 SCI급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함.
- 4)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소속 교원은 주저자/교신저자로 발표한 SCOPUS 등재지 논문 3편을 “주저자/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의 SCI급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함.
- 5) 산학협력업적 점수는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연구실적 대체비율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최소점수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필수기준점수는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산학실적유형	필수기준 대체가능 인정범위	비고
국제특허등록 (대표발명자)	1.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2. 주/교신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 6)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①학술논문, ②저작에 한함.

[별표 2] 교원의 승호기준

1. 정기승호

가. 평가기준

직 위	승호예정호차	계 열	승호심사 및 승호주기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교수	~ 7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
		자연공학		80	
		HK		100	
	6호~1호	인문사회	1년 6월	100	승호예정일 전 1년 6월간
		자연공학		120	
		HK		150	
부교수	~ 7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
		자연공학		80	
		HK		100	
	6호~5호	인문사회	1년 6월	100	승호예정일 전 1년 6월간
		자연공학		120	
		HK		150	
조교수	~ 11호	인문사회	1년	70	승호예정일 전 1년간
		자연공학		80	
		HK		100	

나. 상기 정기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작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 다.	①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 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 기준	교수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 신 논문 1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전문학술저 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부교수 조교수	-	-
주요 보직교원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월 10점의 공헌점수 부여(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4-1-5 ~ 16 인사 행정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한함. 2. '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1-1. 정기승호 탈락자의 '유보승호'

가. 유보승호의 정의

-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평가기준

직위	유보승호 예정호차	계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전체	24호 ~ 7호	인문사회	140	승호예정일 전 2년간
		자연공학	160	
		HK	200	
	6호	인문사회	170	승호예정일 전 2.5년간
		자연공학	200	
		HK	250	
	5호 ~ 1호	인문사회	200	승호예정일 전 3년간
		자연공학	240	
		HK	300	

- 주 1)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주 2)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다. 상기 유보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구분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 저작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다.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기준	교수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2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학술저작 2권 또는 200점 이상 단독 학술저작 1권 3. KCI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1편 및 저작 중 100점 이상 단독 학술저작 1권 4.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5. KCI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2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부교수 조교수	-	-

-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라.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

현호차	유보승호			현호차	유보승호		
	예정(가능)호차	심사대상기간	비고		예정(가능)호차	심사대상기간	비고
1	-	-	가호봉승호 대상(2년 후)	14	12	2년간	
2	1	-	정기승호 대상 (1년 6월 후)	15	13	2년간	
3	1	3년간		16	14	2년간	
4	2	3년간		17	15	2년간	
5	3	3년간		18	16	2년간	
6	4	3년간		19	17	2년간	
7	5	3년간		20	18	2년간	
8	6	2.5년간		21	19	2년간	
9	7	2년간		22	20	2년간	
10	8	2년간		23	21	2년간	
11	9	2년간		24	22	2년간	
12	10	2년간		25	23	2년간	
13	11	2년간		26	24	2년간	

주) 심사대상기간은 유보승호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2. 조기승호

가. 평가기준

직위 (자격)	승호예정호차	계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교수	6호~1호	인문사회	200	승호예정일 전 1년간
		자연공학	250	
		HK	300	

나. 상기 조기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계열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기준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단, 외국학술지 제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 저작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다.	①‘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 (대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 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기준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2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학술저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주/교신 논문 2편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교신 논문 1편 및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주요 보직교원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일 10점의 공헌점수 부여 (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함. 2. ‘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3. 가호봉승호

가. 평가기준

승호예정 호차	자 격	계 열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기간
가1호 ~ 가10호	직전 1호봉 승호 또는 가호봉 승호 후 2년이 경과한 교수	인문사회	150	승호예정일 전 2년간
		자연공학	200	
		HK	200	

나. 상기 가호봉승호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인정기준 및 필수기준

계열	인문사회 / HK	자연공학
인정 기준	①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단, 외국학술지 제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작 ②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 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 2)를 대체할 수 있다.	①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3 중 1) 학술논문 ② ‘교원 업적 평가 규정’ 별표 4 중 1) 특허등록 2) 특허등록을 제외한 평가항목들의 총합(대 체인정비율 적용 이후)은 최대 5점까지 ①의 1)을 대체할 수 있다.
필수 기준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KCI 등재지 이상(후보지 제외) 주/교신 논문 1편 2. 저작 중 100점 이상의 단독 전문학술저 작 1권 3.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다음 각 호중 하나는 반드시 충족 1. SCI급 논문 1편(주/교신) 2. 대표발명자로서의 특허등록 1건
주요 보직 교원 의 특례	1.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처장, 신학협력단장, 재정지원사업단장의 ‘공헌점수’ 1) 보임기간 중 : 1개월 당 10점 2) 보직면직 후 : 보임기간의 50% 기간 동안 매월 10점의 공헌점수 부여 (120점 한도) 3) ‘공헌점수’가 승호 점수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기준 면제 4) 재정지업사업단장의 공헌점수 적용은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함. 2. ‘공헌점수’는 승호기준 점수에 1:1의 비율로 사용 가능	

※ 단, 자연공학 계열의 필수 기준 중 ‘SCI급 주교신 논문’ 1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다.

1.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2. 단, 언어청각학부 및 간호학과 소속교원은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지 주/교신 논문 2편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정 1989. 6. 1	개정 2000. 3. 2	개정 2009. 3.12	개정 2018. 7.18
개정 1990. 2. 7	개정 2003. 1.24	개정 2012. 3. 8	개정 2019. 3.15
개정 1991. 4.10	개정 2003. 8. 4	개정 2012. 8. 9	개정 2019.10.17
개정 1991.10.10	개정 2003.10.23	개정 2013. 8. 2	개정 2022. 2. 9
개정 1994. 3.21	개정 2004. 1.27	개정 2014. 5.30	개정 2022. 8.26
개정 1995.11. 9	개정 2004.11.18	개정 2014.12. 8	개정 2023. 9.12
개정 1996. 6. 4	개정 2005. 4.28	개정 2015. 1.12	
개정 1998. 8.13	개정 2007. 1. 4	개정 2015.11. 2	
개정 1999.10.14	개정 2008.12.11	개정 2018. 2.26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 인사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원의 책무) ①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의과대학의 사명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전공분야별 주요 책무는 별표 1과 같다.

③ 의과대학은 교원 초빙공고 시 교원의 전공분야별 주요 책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지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교원의 임용) ①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② 의과대학 소속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계약으로 임용하되 임용만료일까지 재계약에서 누락된 교원은 퇴직처리 한다.

1. 임상의학분야교원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규재임용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
부교수	2년	6년	4년	5년
조교수	2년	-	4년	5년

2. 기초의학분야교원(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부교수	2년	7년 ^{주1)}	5년
조교수	2년	-	6년

주)1.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3. 기초의학분야교원(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구 분	신규임용	승진임용	신임교원의 재임용	재임용
교수	2년	정년		-
부교수	2년	7년 ^{주1)}	4년	1년(1회 부여)
조교수	2년	-	5년	1년(1회 부여)

주)1.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연구업적점수가 우수한 경우 정년을 보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 계약 시에는 급여, 근무내용 등을 포함한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임용계약서(서식1)를 작성하며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기초의학분야 전임교원은 다음 기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단, “학교법인일송학원정관”에 따른 휴직기간은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 승진소요 최소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부교수 : 7년

2. 조교수 : 8년

⑤ 상기 제2항 제1호의 임용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계산한다.

제 4 조 (신규임용 자격기준) ①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0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부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5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조 교 수 : 전문의 자격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총 10년 이상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람은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임용될 수 있으며, 신규임용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 각 호의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5. 신규임용시 최근 4년 이내(군의원 또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에 SCI(SCIE 포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실적물을 조교수는 3편 이상, 부교수는 4편 이상, 교수는 5편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생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고 의과대학 발전에 상응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으로서 특정분야의 자질이 검증된 사람은 제9조의 임용절차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신규임용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16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2. 부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11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3. 조 교 수 : 연구 및 교육경력 4년 이상이며, 박사학위 소지자
4. 비 의과대학 졸업자의 신규임용시는 전 각 호의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5.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신규임용시 군의원 (공중보건의 포함) 면제자는 각각 해당 자격 기준연수에 1년의 추가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6.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의과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7.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임용직위별 연구업적 최소점수, 연구실적물의 인정범위와 평가기준 및 부가조건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승진임용) ①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어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중 연구 및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승진임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서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승진임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비 의과대학 졸업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시는 제1호 기준에 2년의 추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져야 한다.

②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조교수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2.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은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의 승진임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신규임용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전적경력이 국내 정규 6년제 의과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

전적대학과 동일한 직위로 경력을 인정하여 승진요건에 충족하면 신규임용 계약기간 내일 지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단, 승진 시 임용기간은 신규임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승진임용을 원하는 의과대학 교원은 “교원 인사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신입교원의 재임용 절차 및 일정에 준하여 승진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교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⑤ 기초의학분야교원 부교수 승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교수 승진시 요구되는 연구업적 최소기준의 3배 이상을 충족한 경우
2. 세부전공 최상위 국제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혹은 국제적 학회의 학술상 수상 등 국제 수준에 달하는 연구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의과대학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제 6 조 (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원 인사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는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③ 기초의학분야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6조에 따른다.

제 7 조 (재임용 기준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 8 조 (인사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외국수학자의 신규 또는 승진임용) 학위제도가 다른 외국에서 수학한 사람의 신규 또는 승진임용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학위소지 요건기준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용절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의과대학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 11 조 (교원의 업적평가) 의과대학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에 대한 업적평가는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및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근무처) 기초의학분야교원은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에 근무하며, 임상의학분야교원은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한다.

제 13 조 (교원 인사 규정 준용) 의과대학 교원의 임용, 승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5 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 시에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① 1.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의학부 교원인사규정은 폐지한다.

② 1. 이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90년 4월 1일자 교수승진대상자로서 이 개정규정 제4조 제6호 “나”의 시행으로 승진이 누락되는 교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5 ~ 4 인사 행정

- ③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⑤ 1. 이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의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학술지발표 원저요건은 1995년 9월 1일 이후의 승진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⑥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규정은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1. 이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임상의학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전임강사는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조교수대우로 임용할 수 있다.
3. (기초의학교원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2항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의과대학교원업적심사내규를 적용한다.
4. (재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시기의 재임용대상자에게는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기준을 적용한다.
5. (교수 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그 이전에 교수로 임용된 기초의학교원은 종전의 교원재임용심사기준에 따른 재임용심사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한다.
- ⑩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3호, 2004.11.3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70호, 2005.5.20)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승진한 교원이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근무한 기간은 각각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

교수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경력연수로 인정한다.

③ (근무연한 신설 및 승진심사기회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2조 제3항의 근무연한 및 제4항의 승진심사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 이후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에게 적용한다.

④ (적용의 특례)

1.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 중 인자를 임상의학분야의 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 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야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7호의 SCI(SCIE) 등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을 2010년 9월 신규임용 시까지 적용치 아니하고, 2011년 3월 신규임용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9년 3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교원의 인턴 및 레지던트, 군의관(공보의 포함) 근무경력은 그 기간을 100%로 재산정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개정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종전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기준)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연한은 조교수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④(종전 조교수의 동일직위 재임용 기준)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의 동일직위 재임용 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⑤(적용의 특례)

1.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임상의학분야 교원의 승진임용 심사 시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2. 2009년 3월 1일 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야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학위 소지 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4조 제5항의 승진임용 시기에 관한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되 승진임용 시기 변경에 따라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연수, 연구 및 교육경력이 1개월 이내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재직연수, 연구 및 교육경력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한다.
 2. 승진임용 시기 변경에 따라 2014년 9월 1일부 승진임용 심사대상자의 2014년 9월 연구실적은 현 직위 재직기간 중의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 ③ (석사학위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예정)자로서 종합시험 합격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동일직위 재임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이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면직을 유예한다.
- ③ (직위별 최대 임용기간에 미치지 못한 기초의학분야 교원에 대한 특례) 현재 임용계약상 임용기간이 본 규정 제2조 6항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의학분야 부교수는 동 조가 정하는 기간까지 임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임상의학분야교원의 승진임용 심사회는 제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4회까지 보장하며, 승진심사 탈락시 임용기간 종료일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심사기회 및 승진일자			임용 종료일
	2회	3회	4회	
1회 탈락자	'15. 3. 1	'15. 9. 1	'16. 3. 1	'16. 2.29
2회 탈락자		'15. 3. 1	'15. 9. 1	'16. 2.29
3회 탈락자			'15. 3. 1	'15. 8.31

2. 제3조 제1항의 신규임용 기준은 2015년 9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3월 신규임용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 제4조 제1항의 승진자격 기준, 제5조 2항의 재임용 기준 및 제7조 제1항의 정년보장 기준은 2016년 3월 1일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9월 1일까지의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재임용되는 임상의학분야 조교수 및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은 제2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하며, 조건부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연한은 조

- 교수로 명칭 변경 후 최초 재임용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2. 2012년 7월 22일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 소요 연한은 조교수로 승진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 제1항의 제5호의 연구실적 제출 기준은 2018년 9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18년 3월 신규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적용의 특례)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한림의료원 산하 각 병원에 근무중인 사람을 임상의학분야 교원으로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 제1항 제5호의 연구실적 제출기준은 2019년 3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인 승진임용 심사 결과는 이 개정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결과로 적용한다.
 2.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신규임용 후 3년간 재임용된 교원 및 부교수로 5년간 승진임용된 교원은 이 개정 규정에 따라 4년간 재임용 및 6년간 승진임용된 것으로 하고 임용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전공분야별 책무

전공분야	책무
기초의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의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의사과학자 양성
기초의학분야(의학교육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 학생평가, 교육평가 방법 등의 개선 ○ 교수·전공의 등 의학교육자 교육·훈련
기초의학분야(의료인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문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의과대학과 병원문화 개선에의 기여
임상의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의학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등의 개선 ○ 환자진료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1. 1.19	개정	2021. 6.30
개정	2003. 1.24	개정	2021.11.19
개정	2003. 8. 4	개정	2022. 8.26
개정	2003.10.23	개정	2024. 1. 5
개정	2007. 7.26	개정	2024. 4.24
개정	2008.12.11	개정	2024.10. 2
개정	2012. 8. 9		
개정	2013. 8. 2		
개정	2014.12. 8		
개정	2017. 8. 9		
개정	2019. 3.15		
개정	2020. 9. 9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11조에 의거 의과대학 의학과 기초의학분야교원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봉사활동에 대한 업적평가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원 업적 평가의 목적)** 교원 업적 평가는 교원의 교육, 연구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여 이 대학교의 발전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과대학 의학과 기초의학분야 전임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및 승호 등에 활용한다.
- 제 4 조 (평가시기)** 교원업적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 5 조 (평가영역)** 교원업적의 평가영역은 교육영역, 연구영역, 산학협력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 제 6 조 (평가기구)**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며 산하에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를 둔다.
- 제 7 조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의 교원업적평가를 담당한다.
②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학장과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7명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④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8 조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는 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 9 조 (평가절차)** ① 교원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기간동안의 연구업적을 전산 입력한 후 학사정보시스템으로 본인의 교원업적보고서(지정서식)를 출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익년 1월 10일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주임교수는 교원업적보고서의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학장에게 제출한다.

- ③ 학장은 교원업적보고서를 취합하여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한다.
- ④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는 각 교원의 영역별 업적점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장에게 제출한다.
- ⑤ 학장은 의과대학평가위원회에서 교원의 업적평가점수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교원에게 통보한다.

- 제 10 조 (재심신청)** ① 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학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자가 있을 경우 학장은 의과대학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업적평가

- 제 11 조 (교육영역 평가)** ① 교육영역은 학기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② 교육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교원연구년 기간 동안의 교육영역 평가점수는 학기당 60점으로 한다.
- ④ 담당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 및 실습 시간을 합산한다.
 - 2.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을 추가한다.
- ⑤ 신입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 12 조 (연구영역 평가)** ① 연구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다.

- ②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연구영역 평가항목의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학술논문은 의학·생명과학과 관련된 연구업적이어야 한다. 단, 원저 이외 논문(단보, 속보, 증례보고, 종설 등)은 SCI(E) 등재지에 게재된 것만 인정하며, 인정률은 의과대학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2. 저자는 이 대학 재적생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학생 저자를 제외하고 저자가 1명이 되더라도 평가점수의 90%를 적용하며, 단독논문(1인)인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
 - 3. 공동연구실적평가는 저자 중 교수가 1명이더라도 교수 본인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저자(30%)로 적용한다.
 - 4. 공동저작물인 경우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가. 2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80%, 제1저자 60%
 - 나. 3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70%, 제1저자 50%, 기타저자 30%
 - 다. 4인 이상 공동연구: 교신저자 60%, 제1저자 40%, 기타저자 30%
 - 라. 공동교신, 공동 제1저자인 연구실적의 경우 평가점수의 70%를 인정한다.

- 제 13 조 (산학협력영역 평가)** ① 산학협력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다.

- ② 산학협력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 14 조 (봉사영역 평가)** ① 봉사영역은 연 단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한다.

- ② 교내봉사의 각종 위원회 인정범위는 의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③ 교외봉사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여 재임한 경우에 인정한다.
- ④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 4 장 평가결과의 적용기준

제 15 조 (승진임용 기준) ① 교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평가기간은 승진 임용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1. 승진직위별 평가기간, 연구업적 점수, 산학협력업적 대체기준 등은 [별표 5-1], [별표 5-2]와 같다.
2.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현 직위 재직 기간 중 반드시 교내외 의학교육관련 연수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승진심사에 탈락된 교원 및 미신청한 교원은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업적평가는 승진임용 예정일을 기점으로 승진 직위에 필요한 평가기간 점수의 합계로 평가한다.

제 16 조 (신임교원의 재임용 및 재임용 기준) ① 신규임용 된 교원은 직위와 관계없이 신규임용 후 2년 동안의 업적을 평가받으며, 신임교원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 기준은 [별표 6-1], [별표 6-2]와 같다.

② 조교수, 부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 17 조 (기초의학교원 호봉승급 기준) ① 교수의 교원업적평가 점수에 따른 호봉승급 기준은 [별표 8-1], [별표 8-2]와 같다.

② 승호를 원하는 교원은 총장이 정한 기간에 “승호심사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신청한 교원은 승호를 할 수 없다.

제 18 조 (학술연구발표 심사) 상기 제15조 및 제16조의 승진 및 재임용을 위한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 교육영역)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9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규정개정) 이 규정개정 시에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① 1.(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가. 2000년도 7월 1일 이후의 교원업적은 이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6월 30일 이전의 교원업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교육업적의 평가는 취득평점을 1.2배하여 산출한다.
- 연구업적의 평가는 이 규정 또는 제정전의 교원업적심사내규중 심사대상자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여 평가한다.
- 평가결과의 적용기준은 이 제정규정에 따른다.

3.(규정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의과대학교원업적심사내규는 폐지한다.

② 이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1-6~4 인사행정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승진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의 교원업적평점 기준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하고, 기존 교원은 종전의 규정(2003.10.23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의 특례) 기초의학분야 게재예정증명서가 첨부된 연구업적은 심사기간내 게재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 조치)
 - 1. 제15조(승진임용 기준)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까지의 승진심사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2. 제17조(호봉승급 기준) 1항 개정에 따른 적용일은 다음과 같다.
 - 가. 25호봉에서 7호봉까지 정기승호 대상자 및 6호봉에서 1호봉까지 조기승호 대상자 : 2015년 3월 1일자 적용
 - 나. 6호봉에서 1호봉까지 정기 승호 대상자 : 2015년 9월 1일자 적용
 - 다. 가호봉 승호대상자 : 2016년 3월 1일 적용
- ③ (규정 폐지) 이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의과대학 신규임용 기초의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내규 및 재직중인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원에 대한 임용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봉사영역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된 봉사영역 평가 기준은 2017년 교원 업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학과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기준	비 고	
담당 강의	강의시간	기준시간 이내 : 50점 초과시간: 0.5점/시간	·기준시간은 의학과 교원의 평균 수업시간임 ·대학원 강의 포함 ·보직에 따른 면제시간 추가	
교육 참여	교과 교육과정	15점/강의	·의학과 전공교육과정 책임교수	
	일반교양 및 대학원공통과목	10점/강의	·신입생세미나, 일반교양, 대학원 공통과목 책임교수	
	자기주도적학습 수업운영	5점/건	·선택실습, 소규모토론, PBL, TBL, 증례토의(수업계획서에 반영된 수업 기준 최대 3건[15점]까지 인정)	
학생 지도	학 부	5점/항목	·평가항목 1) 면담실적(C.E.P.입력 1건 이상) 2) 학부생 지도교수 3) 동아리 지도교수 4) 학생집회 참여 지도	
		연구멘토링(심화 포함) 관련	8점~16점	·연구멘토링 담당 교수, 기본 8점 1~3회 지도: 2점 추가 4~6회 지도: 4점 추가 7~9회 지도: 6점 추가 10회 지도 이상: 8점 추가
		8점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주저자로 해외학회에서 발표 ¹⁾	
	16점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SCI(E)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 ¹⁾		
	대학원	석사	5점/명	·석박사 지도학생(재학생 기준) (최대 50점까지 인정)
		박사	10점/명	
학생 선발	위촉사정관		·의학과 신·편입생 선발에 한함 (위원 변경 시, 활동기간만큼 부여함)	
	서류심사	수시		16점/건
		편입학		10점/건
	면접심사	정시, 수시		5점/건
편입학		5점/건		
기타	영어강의 교과목 담당	5점/건		
	의학교육연수 ²⁾ 및 회의 참석	5점/건	·의학교육관련 연수 및 회의 참석 (참가확인서 및 수료증 제출)	
	교육과정 평가관리	5점/건	·학부,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출제 및 시험감독	
	수업계획서 미입력	-2점/건	·학부, 대학원 수업계획서 미입력 교과목당	
	교육과정 개선, 평가인증 관련 활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시 5점/영역별(최대15점) ※ 위원장, 간사, 위원(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	·보고서 작성, 제출 학기만 해당	
	자체평가회의 참석	5점/건		

- 1) 해외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시점의 해당년도에 교육점수를 부여하며,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된 발표서류 및 게재 논문에 한함
- 2) 의학교육 연수: 의학교육연수원, 의학교육평가컨소시엄, 의학교육평가원 등 교외 연수 및 교내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회의 등

별표 2. 의학과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

평가항목	인정기준	점 수
국제학술지	SCI급 학술지 (SCI(E), SSCI, A&HCI 등재 학술지)	영향력지표(IF) IF<1.0 : 150점 1.0≤IF<3.0 : 200점 3.0≤IF<4.0 : 300점 4.0≤IF<5.0 : 400점 5.0≤IF<7.0 : 500점 7.0≤IF<10.0 : 600점 10.0≤IF : 700점
	SCOPUS / Medline 등재지	120점
국내학술지	KCI 등재지	100점
학술저작	전공 관련 저서, 번역서 및 교과서 (ISSN, ISBN 부여된 저작에 한정하며, 개정판은 제외함)	100점

◆ 연구영역(학술지 및 학술저작) 항목별 세부 인정기준

세부기준
<p>가. 저자는 이 대학 재적생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학생 저자를 제외하고 저자가 1명이 되더라도 평가 점수의 90%를 적용하며, 단독논문(1인)인 경우에는 100%를 인정한다.</p> <p>나. 공동저작물은 기여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80%, 제1저자 60% · 3인 공동연구: 교신저자 70%, 제1저자 50%, 기타저자 30% · 4인 이상 공동연구: 교신저자 60%, 제1저자 40%, 기타저자 30% · 공동교신, 공동 제1저자인 연구실적의 경우 평가점수의 70%를 인정한다. <p>다. 공동연구실적 평가는 저자 중 교수가 1명 남더라도 교수 본인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저자(30%)로 적용한다.</p> <p>라. 국제학술지(SCI급) IF 기준 적용방법 -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한다.</p> <p>마. 온라인 출판 논문의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출판 없이 온라인으로만 출판되는 저널의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제출할 경우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DOI 및 출판일, 권, 호, 페이지가 모두 부여되어 공식적으로 온라인에 탑재된 경우

별표 3. 의학과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인정기준표

평가항목		기 준	비 고
기술이전 기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상 : 400점 - 5천만원 이상 : 300점 - 3천만원 이상 : 250점 - 1천만원~3천만원 미만 : 200점 - 5백만원~1천만원 미만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산학협력단)가 기술 등 지식 이전 계약의 주체가 되어 수행한 경우 또는 본교(산학협력단)에 귀속된 특허에 따른 수입발생에 한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외부 연구비 수주액 (공동연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상 : 300점 - 2억원 이상 : 200점 - 1억원 이상 : 100점 - 5천만원~1억원 미만 : 70점 - 1천만원~5천만원 미만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수주액으로 산정하며 본교 산학협력단 지정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함. - 연구비 최초 수주(최초계약)시부터 참여한 과제에 한함. - 공동연구는 책임연구자가 설정한 총 입금액 기준 배분비율로 산정 - BK21, ACE 등 인력양성성격의 국책 사업은 제외(‘대학정보공시’ 상의 연구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한정하여 인정) ※ 소수점 이하는 버림
기술·경영지도 /기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건당 2점(최대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및 경영지도를 위하여 산학협력단과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자문료가 본교(산학협력단) 지정계좌에 입금된 경우에 한함. - 자문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인정 불가
특허 등록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한함. - 국외특허는 OECD가입 국가등록 시 인정(기타 국가의 경우 국내특허로 인정) - 산정방식 : 대학본부 연구논문 공저자 산출 방식에 의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당 400점 	

별표 4. 의학과 봉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기준

구분	업적내용	인정기준		평점 (연간)
교내	학교 보직 수행	교무위원으로 보임 기간(1년간)		30
		학부(과)장, 전공주임교수 보임기간 (1년간)		30
	학생 취업지도	목표 취업률	최소 취업률	3
			권장 취업률	5
	국고사업참여	국고사업 지원 (1회당)	위원장	30
			위원	20
		국고사업 선정 (1회당)	위원장	50
			위원	30
		국고사업 수행 (연간)	단장급	50
			부장급	30
	※ 중복 인정은 하지 않음			
각종 위원회	단기 집중작업 특별위원회 위원 (대학발전계획 수립 등)		2	
교수자 프로그램 참여 (건당)	본교 교육혁신센터 주관 교수자 프로그램 참여시		1	
본교발전기금 등 기부	본교에 발전기금 등 기부금품 납부 또는 유치 (1,000 만원 당)		2	
교외	국내기관 지원활동	공공기관, 민간단체, 산업체 지원활동		2
	국제기구 지원활동	임원, 자문위원, 심판 등		2
	국내·외 학회활동	국제저명학술지 (SCI(E), SSCI, SCOPUS, EconLit)	회장	3
			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2
		KCI등재(후보)지	회장	2
			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	1
	국가고시 등 출제위원	국가고시 출제 위원		2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2
	언론매체 홍보(건당)	중앙 일간지, 전국 송출 TV, 라디오		2
		지역 일간지, 지역 송출 TV, 라디오		1
	외부 학술 봉사상 수상 (건당)	전국단위로서 심사제도가 있는 학술 및 봉사상		5

4-1-6~10 인사행정

별표 5-1. 의학과 교원의 승진 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진직위	부교수	교수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 ¹⁾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 ²⁾³⁾	4	5
우수논문 가중치 적용	- JCR 상위 5%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3편으로 인정 - JCR 상위 10%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2편으로 인정 - JCR 상위 30% 학술지 주저자 발표 시 1.5편으로 인정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 (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4편)	0편	7편
	1편	5편
	2편	4편
	3편	2편
	4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5편)	0편	8편
	1편	6편
	2편	5편
	3편	3편
	4편	2편
	5편	0편

별표 5-2. 의학과 교원의 승진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진직위	부교수	교수			
승진최소연한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 ¹⁾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 ^{가)2)}	7(교신저자 3편이상)	6(교신저자)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 교육영역)	연구 영역 평균 3.5점 이상이고, 교육 영역 '가(PASS)'	연구 영역 평균 20점 이상이고, 교육 영역 '가(PASS)'			
공통사항	- 부교수, 교수 승진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청 또는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 ^{가)}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 ¹⁾ (100%)	공동주저자 수 ²⁾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 ³⁾ 10이상 또는 JCR ³⁾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³⁾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단독주저자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4-1-6~12 인사행정

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 (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7편)	0편	12편
	1편	11편
	2편	9편
	3편	7편
	4편	5편
	5편	4편
	6편	2편
	7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6편)	0편	10편
	1편	8편
	2편	6편
	3편	5편
	4편	3편
	5편	2편
	6편	0편

별표 6-1. 의학과 신입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평가기간	평점기준		
	업적 최소 점수	연구영역 최소 점수 ¹⁾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 ²⁾³⁾
2년	520점	340점	2편

1)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KCI 등재지를 아래와 같이 환산 한다.

SCI급	KCI
0편	3편
1편	1편
2편	0편

별표 6-2. 의학과 신입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신입교원의 재임용 직위	조교수, 부교수, 교수				
평가기간	2				
업적평가최소점수	520점				
연구영역최소점수 ¹⁾	340점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 ^{가2)}	2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 ^{가)}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 ¹⁾ (100%)	공동주저자 수 ²⁾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IF ³⁾ 10이상 또는 JCR ³⁾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³⁾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 및 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단독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 1편으로 대체)

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KCI 등재지를 아래와 같이 환산 한다.

SCI급	KCI
0편	3편
1편	1편
2편	0편

별표 7. 의학과 교원의 재임용 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재임용직위	조교수	부교수																									
평가기간	6	5																									
업적평가최소점수	1,980	1,650																									
연구영역최소점수 ¹⁾	1,310	1,050																									
KCI등재지이상 필수기준점수	800	680																									
SCI급 주저자 논문 최소 편수 ^{가)2)}	7(교신저자 3편이상)	6(교신저자)																									
학술연구발표 (연구 및교육영역)	연구 영역 평균 3.5점 미만이고, 교육 영역 ‘가(PASS)’	연구 영역 평균 15점 이상 20점 미만이고, 교육 영역 ‘가(PASS)’																									
공통사항	- 조교수, 부교수 재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청 또는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 ^{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인정비율)</th> <th rowspan="2">단독 주저자¹⁾ (100%)</th> <th colspan="3">공동주저자 수²⁾</th> </tr> <tr> <th>2인 (70%)</th> <th>3인 (50%)</th> <th>4인이상 (30%)</th> </tr> </thead> <tbody> <tr> <td>IF³⁾ 10이상 또는 JCR³⁾ 상위10%이내</td> <td>2편</td> <td>1.4편</td> <td>1편</td> <td>0.6편</td> </tr> <tr> <td>JCR³⁾ 상위 30%이내</td> <td>1.5편</td> <td>1.1편</td> <td>0.8편</td> <td>0.5편</td> </tr> <tr> <td>상기 외</td> <td>1편</td> <td>0.7편</td> <td>0.5편</td> <td>0.3편</td> </tr> </tbody> </table>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 ¹⁾ (100%)	공동주저자 수 ²⁾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 ³⁾ 10이상 또는 JCR ³⁾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³⁾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구분 (인정비율)	단독 주저자 ¹⁾ (100%)	공동주저자 수 ²⁾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 ³⁾ 10이상 또는 JCR ³⁾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³⁾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1) 단독주저자는 조교수(1인 제1저자 혹은 1인 교신저자), 부교수(1인 교신저자)를 의미하고, 부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단독주저자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공동주저자 수: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수의 총합을 의미																											
3) Impact Factor(IF)와 JCR은 평가시점 2년전 또는 1년전 IF 중, 평가교원에게 유리한 것 적용																											

1)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영역 점수는 산학협력 업적점수를 아래와 같이 1:1의 비율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산학실적유형	대체가능 인정범위
기술이전기술료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단,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제외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불가
외부연구비수주액	
국내특허등록	
국제특허등록(공동발명자)	
국제특허등록(대표발명자)	1. 연구영역 최소점수 2. KCI등재지 이상 필수기준 점수 대체 가능 3. 주저자 논문 최소기준 대체 가능(특허 1건은 논문1편으로 대체)

4-1-6~16 인사행정

2)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의 경우 학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SCI급 논문을 KCI 등재지로 아래와 같이 대체할 수 있다.

직급(주저자 논문 편수)	보건정책학, 의료관리학 및 의학교육학전공 논문 대체기준	
	SCI급	KCI
조교수→부교수 (SCI급 7편)	0편	12편
	1편	11편
	2편	9편
	3편	7편
	4편	5편
	5편	4편
	6편	2편
	7편	0편
부교수→교수 (SCI급 6편)	0편	10편
	1편	8편
	2편	6편
	3편	5편
	4편	3편
	5편	2편
	6편	0편

별표 8-1. 의학과 교원의 승호기준(2022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호구분	직위	승호예정 호차	평가기간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필수기준(다음 중 하나 충족) ²⁾³⁾
정기승호	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정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정기승호	부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정기승호	부교수	6호~5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
정기승호	조교수	~1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유보승호 ¹⁾	전체	24호~7호	승호예정일 전 2년	240점	1. SCI급 주저자 2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저자 1편 및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유보승호의 경우 교수에 한정하며, 부교수 및 조교수는 연구영역 최소점수만 필수
유보승호	전체	6호	승호예정일 전 2.5년	300점	
유보승호	전체	5호~1호	승호예정일 전 3년	360점	
조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360점	
가호봉 승호	교수	가1호~가2호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가호봉 승호	교수	가3호 이상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SCOPUS 주교신 2편 3.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 1)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 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는 “교원 인사 규정” [별표2] 교원의 승호 기준에 따른다.

- 2) 동일 논문에서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가 2인 이상 본교 전임교원인 경우에는 교신저자 1명만 주저자로 인정한다. 단, 조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주저자의 업적으로 인정하되, 동일 논문의 교신저자는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은 SCI급 논문 1편을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8-2. 의학과 교원의 승호기준(2022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 적용)

승호구분	직위	승호예정 호차	평가기간	승호기준 (연구영역 최소점수)	연구영역 최소점수 평가를 위한 필수기준(다음 중 하나 충족) ²⁾³⁾
정기승호	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정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정기승호	부교수	~7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정기승호	부교수	6호~5호	승호예정일 전 1년6월	180점	-
정기승호	조교수	~1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120점	-
유보승호 ¹⁾	전체	24호~7호	승호예정일 전 2년	240점	1. SCI급 주저자 2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2건 3. SCI급 주저자 1편 및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유보승호의 경우 교수에 한정하며, 부교수 및 조교수는 연구영역 최소점수만 필수
유보승호	전체	6호	승호예정일 전 2.5년	300점	
유보승호	전체	5호~1호	승호예정일 전 3년	360점	
조기승호	교수	6호~1호	승호예정일 전 1년	360점	
가호봉 승호	교수	가1호~가2호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가호봉 승호	교수	가3호 이상	승호예정일 전 2년	300점	1. SCI급 주저자 1편 2. SCOPUS 주교신 2편 3. 대표발명자 특허등록 1건

- 1) 유보승호란 정기승호 탈락자(미신청자)가 차기 정기승호 평가기간에 아래의 평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직전 탈락호차까지 포함하여 2개 호봉을 승호하는 것을 말한다.
 - 유보승호 심사 기회는 각 직위별로 2회에 한정하며 승호심사 대상교원은 승호심사 신청 시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최초 유보승호 탈락 교원은 탈락일을 기준으로 해당 심사대상 기간에 따라 다음 정기승호 및 최종 유보승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유보승호 심사에 사용한 업적점수는 최종 유보 승호 심사에 중복 사용할 수 없다.
 - 유보승호에 따른 호차별 최대 도달가능 호차는 “교원 인사 규정” [별표2] 교원의 승호 기준에 따른다.

- 2) 의학과 신입교원의 재임용 기준 [별표6-2] 내 ‘분야별 우수 논문 환산기준’을 따른다.

- 3) 사회의학 전공 중 보건정책학 및 의료관리학, 의학교육학 담당 교원은 SCI급 논문 1편을 KCI 등재지 또는 SCOPUS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 2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정 2003.10.23	개정 2012. 8. 9	개정 2019. 8. 1
개정 2004.11.18	개정 2014. 5.30	개정 2020. 9. 9
개정 2007. 1. 4	개정 2015. 1.12	개정 2021.11.19
개정 2008.10. 2	개정 2015.11. 2	개정 2022. 2. 9
개정 2008.12.11	개정 2017. 8. 9	개정 2024. 1. 5
개정 2009. 3.12	개정 2018. 2.26	개정 2024. 4.24
개정 2010. 1.18	개정 2018. 7.18	개정 2024.10. 2
		개정 2025. 1.14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11조에 의거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교원 업적평가의 목적) 교원 업적평가는 교원의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의 학문적 수준을 높여 이 대학교의 발전과 건학이념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의과대학 의학과 임상의학분야 전임교원 (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재임용, 승진임용 등에 활용한다.
- 제 4 조 (평가지기) 교원업적평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 5 조 (평가영역) 교원업적의 평가영역은 연구영역, 교육영역, 봉사영역으로 구분한다.

제 2 장 평가기구 및 절차

- 제 6 조 (교원업적평가위원회) ① 임상의학분야 교원 업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이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제 7 조 (교원 업적평가절차) ① 교원은 매년 1월 초 평가기간동안의 연구업적을 HRI 시스템에 입력하고, 교원업적보고서(서식1)와 연구실적물을 출력하여 의과대학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과대학장은 평가위원에게 업적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내용을 상정한다.
③ 의과대학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인별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각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 제 8 조 (연구실적 심사절차) ①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연구실적물 1부를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송부한다.
② 의과대학장은 심사대상자가 속한 병원별로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연구실적 심사를 의뢰한다.
③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연구실적을 심사한다.
④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조사서(서식3) 및 연구실적심사보고서(서식4)에 심사결과를 기재한다.
⑤ 연구실적심사위원장은 연구실적심사보고서에 각 위원의 날인을 받은 후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한다.

제 9 조 (재심신청) ① 교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소명자료 첨부)으로 학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에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학장은 의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한다.

제 3 장 업적평가

제 10 조 (영역별 평가) ①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SCI(E) 등재학술지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실적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편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SS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은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SCI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분 (인정비율)	단독저자 (100%)	공동주저자 수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IF 10이상 또는 JCR 상위10%이내	2편	14편	1편	0.6편
JCR 상위 30%이내	1.5편	11편	0.8편	0.5편
상기 외	1편	0.7편	0.5편	0.3편

주 1) 공동주저자 : 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

2) Impact Factor(IF) 와 JCR은 평가시점 기준 최근값을 적용한다.

2. 논문종류가 종설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비율을 정한다.

3. PubMed에서 검색되는 영문 논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논문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한다.

4. 인정기간 내에 paper publish된다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한 연구실적 및 권, 호, 페이지가 있는 E-publish 연구실적은 paper publish로 인정한다.

5. 모든 연구업적은 이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6.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신저자가 타기관 교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1저자 논문을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영역의 평가기준 및 인정점수는 서식2와 같다.

③ 봉사영역은 대내·외 활동 등 8개의 항목을 평가한다.

1. 대내(교내) 활동

가. 대학강의

나. 보직 수행

다. 위원회 활동

라. TFT 활동

2. 대외(학술) 활동

가. 국내외 학회발표

나. 좌장 활동

3. 학회 활동

가. 국내외 학회활동(임원, 편집위원등)

나. 언론매체(Media) 홍보

제 4 장 평가결과의 적용기준

제 11 조 (신규채임용 및 재임용기준) ① 신규임용 교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업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부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조교수	2년	SCI(E) 원저 1편	총 18시간 (신임교수워크숍 포함)

주) 신임교수워크숍은 반드시 신규임용 1년 이내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재임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학술연구발표
부교수	6년 ¹⁾	SCI(E) 원저 4.8편	총 18시간	3.75점
	5년 ²⁾	SCI(E) 원저 4.0편	총 15시간	
	4년 ³⁾	SCI(E) 원저 3.2편	총 12시간	
조교수	5년 ⁴⁾	SCI(E) 원저 4.0편	총 15시간	-
	4년 ⁵⁾	SCI(E) 원저 3.2편	총 12시간	-

주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교원

2) 부교수로 재임용된 교원

3) 부교수 신규임용 후 4년간 신규재임용된 교원

4) 조교수로 재임용된 교원

5) 조교수 신규임용 후 4년간 신규재임용된 교원

③ 제12조의 교수 승진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정년보장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교수는 5년간 재임용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업적 참여시간은 의과대학에서 주관하거나 의과대학장이 인정하는 의학교육관련 연수 또는 학생교육관련 회의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단, 치과학 교원은 교육업적 필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연구 및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임용 기간 만료일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2 조 (승진임용기준)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업적은 다음과 같다.

승진 직위	현직최소연수	평가기간	연구업적 (주저자 논문)	교육업적	학술연구 발표
교수	부교수로 5년	5년	SCI(E) 원저 4편	총 15시간	4.0점
부교수	조교수로 5년	5년	SCI(E) 원저 4편	총 15시간	3.5점

주) 평가기간은 승진임용예정일의 직전일부터 기산한다.

② 부교수 및 교수 승진임용 시 연구책임자로 3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신청 또는 연구책임자로 1건 이상의 국책연구과제 수혜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교수 승진임용 시 정년보장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정년보장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교육업적 산정방식은 제11조 제3항의 내용을 따른다. 단, 승진임용시 신규재임용 심사에서 취득한 교육업적은 6시간까지 인정한다.

제 13 조 (학술연구발표 심사) 상기 제11조 및 제12조의 학술연구발표 심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4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24호, 2004.11.30>

이 개정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12조 제3항의 교육업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하며, 2007년 3월 1일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2. 제12조 제4항의 워크샵 참석요건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는 2010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승진한 교원이 조교수대우, 부교수대우 및 교수대우로 근무한 기간은 각각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한다.
 - 2. 제12조 제1항의 제1호의 SCI(SCIE) 등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은 2011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3.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SCI(SCIE) 등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실적물 제출기준은 2012년 4월 1일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시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해당 학회의 주학술지 또는 대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발표된 원저 2편 이상을 제출토록 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직위로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은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동일직위 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최초 재임용 심사는 종전 규정의 조교수 승진임용 기준을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한다. 단, 이 개정 규정 시행전 조교수로의 승진심사에 3번 탈락한 교원은 2012년 9월까지 종전 규정의 조교수 승진기준 미충족시 종전규정에 따라 2013년 2월말에 당연 퇴직한다.
3.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조교수로 명칭이 변경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는 위 2호에 따라 재임용 된 이후의 연구실적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의 부교수 승진임용 심사에는 조교수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이후의 연구실적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재임용 및 승진임용 기준에 대한 적용
제10조의 신규재임용 및 재임용기준, 제11조의 승진임용기준은 2016년 3월 1일 대상자부터 적용하며, 2015년 9월 1일까지의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2016년 3월 1일 이후 재임용 및 승진임용시 교육업적 최소기준은 2015년부터 연 평균 3시간으로 한다. 단,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는 부교수 승진임용 전까지 신임교수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제1저자 실적 인정에 대한 적용) 제9조 제1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전에 게재되는 부교수 및 교수의 제1저자 논문은 주저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조건부 재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 교수업적보고서 평균평가점수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업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 교육업적 평가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된 규정은 2018년 교육업적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의 승진임용 기준은 2018년 3월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 18.2월이전 임용된 임상의학분야교원 중 조교수의 재임용 연구업적 기준은 평가기간 연평균 0.6편으로 한다.
 - 2. 제11조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평가기간으로 임용된 교원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에 한정하여 연구업적은 연평균 0.8편, 교육업적은 연평균 3시간을 적용한다.
 - 3. ' 18.9월 이후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신규재임용 제외)심사를 받은 교원은 향후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시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 18.8월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 18.9월 이후 최초 재임용 심사(신규재임용 심사 미포함)에 한정하여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해당학기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중 ' 20.4월 이후 신규임용, 승진임용, 재임용(신규재임용 제외)심사를 받은 교원은 향후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여 탈락 시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 20.3월 이전 신규임용된 교원에게는 최초 재임용 심사(신규재임용 심사 미포함)에 한정하여 재임용 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해당학기 승진임용 심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u>제출연구실적</u>						<u>인정연구실적</u>				
<u>환산 IF 합계</u> : _____ 점 <u>SCI(E) 환산 편수</u> : _____ 편						<u>환산 IF 합계</u> : _____ 점 <u>SCI(E) 환산 편수</u> : _____ 편				

2. 교육영역

평가항목	인정점수	비고
학생면담 및 카운슬링 (년간)		
학생 교육과정 참여		
교내외 학생교육관련 연수		
학생교육개발 회의참여		
학생 교육 관련 경고		
계		

3. 봉사영역

1)

대내(교내) 활동

■ 대학강의/보직/위원회/TFT 활동 등

1) 대학강의 (의대 본과 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외부출강)

대상자	강의제목	장소	연간강의시간	비고

2) 보직

보직명	기간	비고

3) 위원회 활동

위원회명	기간	직책	활동내용	비고

4) TFT 활동(재단 TFT)

TFT명	기간	직책	활동내용	비고

5) 기타 활동

2)

대외(학술) 활동

■ 학회발표

1) 국내외학회 연제발표(구연 또는 포스터로 본인이 제 1발표자인 경우에 한함)

구분 (국내,국외)	발표제목	발표형태 (구연,포스터)	학회명	장소	일시

2) 국제 또는 국내학회 등 초청강연

구분 (국내,국외)	학술대회명 또는 초청자명	강연제목	장소	일시

■ 좌장 활동

구분 (국내,국외)	학술대회명 또는 초청자명	강연제목	장소	일시

(서식 2)

교육업적 평가항목 및 인정점수

평가항목	기준	배점	내용
강의담당시간	시간당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교 학부강의/실습, 대학원 공통과목 담당 시간 인정 타 대학 및 외부 기관 강의는 인정하지 않음 (단, 학장이 추천하는 경우 인정) PBL/TBL, 소그룹토의 tutor 참여, CP개발 및 운영 포함
	CPX 개별 피드백 강의 시간당	2	
임상실습	임상의학 실습 교육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시간(주당 40시간)×실습 주×0.2×(가중치*) / 참여 전임교원 수 (교실별, 병원별) * 가중치 : 주임교수 (내과는 분과별 주임교수)가 임상의학실습교육 참여 및 기여도를 판단하여 교실 전임교원 인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가중치는 최대 30%이내로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학생실습지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시간(주당 40시간) × 실습 주 × 0.3 / 참여 전임교원 수 (교실별, 병원별)
시험관리	CPX/OSCE 채점교수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환산함
	임상종합시험 채점(감독)교수	2	
	대학원 시험 출제 및 채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환산함 논문제출자격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임상종합시험 출제문항당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문항에 한함
	의사국가시험 관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항개발위원회 위원장/위원 의사국가시험 실기 출제 또는 채점 의사국가시험 필기 출제 임상의학종합평가 컨소시엄 출제 위원 건당 환산함
학생 면담 및 입력	1~5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학생면담 및 지도 결과를 진로지도시스템에 입력한 횟수에 따라 인정함
	6~10회	2	
	11~15회	3	
	16~20회	4	
	21회이상	5	
교육관련 활동	통합교육과정 책임/실무교수, 임상실습과정 주임교수, 과별 임상실습책임교수, 병원/학년별 학생교육담당교수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실습담당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중복 시 하나의 활동 점수만 인정
	병원/과별 실습담당교수, 내과 전체 총괄교수, 내과 병원별 총괄교수, 병원별 내과 분과 총괄/간사교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기 개월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실습담당교수 및 총괄/간사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교수 수로 계산함) 중복 시 하나의 활동 점수만 인정
	학생교육관련위원회 ¹⁾ 위원장, 간사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된 회의에 50% 이상 참석한 경우에 인정함
	학생교육관련위원회 ¹⁾ 위원	6	
	교육관련 학교 대표활동	6	
	학생지도교수, 학년담임교수	6	
	선택실습 지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환산함

	연구멘토링(심화 포함) 관련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멘토링 담당 교수, 기본 8점 1~3회 지도: 2점 추가 4~6회 지도: 4점 추가 7~9회 지도: 6점 추가 10회 지도 이상: 8점 추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주저자로 해외 학회에서 발표²⁾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멘토링 지도 학생이 SCI(E)급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²⁾ 	
	기타 학장이 인정하는 교육관련 활동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5점까지 부여 가능함(부여배점 / 학장이 인정한 교원 수) 	
학생선발	위촉사정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과 신·편입생 선발에 한함 (위원 변경 시, 활동기간만큼 부여함)
	서류심사	수시	16	
		편입학	10	
	면접심사	정·수시	5	
편입학		5		
대학원 석·박사배출	석사 배출 1인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위 취득 시점으로 점수 산정 연간 상한점수 30점 	
	박사 배출 1인당	8		
교내·외 학생교육관련 연수	학생교육관련 연수 ³⁾⁴⁾ 또는 학생교육관련학회 강사 참여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환산함
	학생교육관련 연수 또는 학생교육 관련학회 단순 참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기준으로 하되, 참여일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교육자료 개발 및 참여	교육 Module 개발 (PBL, CPX, OSCE, 증례 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당 환산함
	SP(모의환자)교육		3	
	e-learning 관련자료 제작		5	
	mini CPX, OSCE 참여		3	
교육과정 개선, 평가인증 관련 활동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위원장, 간사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서 작성, 제출하기만 해당 1일 기준으로 하되, 참여일 수를 반영하여 환산함
		위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경우)	4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참석		2	
기타	학생교육 관련 경고 등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계획서 미입력, 출석부 미제출, 실습 교육 미참여 등 학생교육 관련하여 주임교수, 과정책임교수의 경고(단위수업계획서 미제출, 무단 결강 및 무단 수업 변경, 시험문항 미제출, 실습교육 운영미비 등) 등 	

- 1) 학생교육관련위원회 : 교과과정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문항개발위원회, 성과바탕학습위원회, 의료인문학위원회, 기초-임상연계학습위원회 등
- 2) 해외학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시점의 해당년도에 교육점수를 부여하며, 의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된 발표서류 및 게재 논문에 한함
- 3) 학생교육관련 교내 연수 : 신입교수워크숍, 중견교수워크숍, 문항개발워크숍, 통합교육과정 워크숍, 의학교육세미나, OSCE/CPX/PBL/TBL 등 교육개발 관련 세미나, 성과바탕 학습 교육세미나 등
- 4) 학생교육관련 교외 연수 : 전국 의과대학에서 실시하는 학생교육 관련 워크숍, 서울대학교 연수원, CPX컨소시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과대학장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생교육 관련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

(서식 3)

연구실적조사서

(인정기간 : 0000. 00 - 0000. 00)

소속 :

현직위 :

성명 :

연번	논문 제목	게재지	발행년월	저자역할 (공동주저자수)	논문 종류	학술지 구분	Impact Factor	JCR Ranking (%)	인정 편수	비고 (ISSN)
1										
2										
3										
4										
5										
인정연구실적 : <u> </u> 편				가산편수내역						
SCI(E) 주저자 원저 : <u> </u> 편				IF 10.0 이상 : <u> </u> 편 → <u> </u> 편						
SCI(E) 주저자 종설 : <u> </u> 편				JCR Ranking 10% 이내 : <u> </u> 편 → <u> </u> 편						
				JCR Ranking 30% 이내 : <u> </u> 편 → <u> </u> 편						

(서식 4)

연구실적심사보고서

(승진임용)

대상교원	소 속	성 명	현 직위		승진심사 직위
심사내용	구분		주저자	공동 주저자	인정편수
	Impact Factor	10.0 이상	편	편	편
	JCR Ranking	상위 10% 이내	편	편	편
		상위 30% 이내	편	편	편
		기타	편	편	편
계		편	편	편	
심사결과	합격 (인)		불합격 (인)		
심사년월일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위원					
교실		직 위	성 명	날 인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의과대학장 귀하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급여 규정

제정 2009. 3.12

개정 2015. 1.12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교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급여라 함은 기본급과 성과급, 기타 제 수당을 말한다.
- 제 4 조 (지급일) 급여는 월급으로 하고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휴일인 때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 제 5 조 (계산기간) 급여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제 6 조 (계산기준) ① 급여는 인사발령일을 기준하여 월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②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월 급여액의 1/30로 계산한다.

제 2 장 급 여

- 제 7 조 (급여) 교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표에 따른다.
- 제 8 조 (급여책정) 초임 급여는 경력을 참작하여 임명권자가 정한다.
- 제 9 조 (기본급) 직위별로 책정되어 있는 고정급여로 해당 직위기간 동안 동일한 액수로 지급한다.
- 제 10 조 (성과급) ① 성과급은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3월 급여 지급 시부터 익년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적용한다.
③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1 조 (휴직중의 급여) 휴직중인 교원의 급여는 법인정관 제47조에 따른다.
- 제 12 조 (직위해제자의 급여) 직위해제중인 교원의 급여는 법인정관 제48조에 따른다.
- 제 13 조 (퇴직자의 급여) 퇴직자의 퇴직 월 급여는 근무일수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년퇴직자, 사망퇴직자는 근무일수에 불문하고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제 3 장 제 수 당

- 제 14 조 (제 수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수당
 2. 보직수당
- 제 15 조 (연구수당) 교원에게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6 조 (보직수당) 교원이 본직 이외의 보직에 보임된 경우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7 조 (지급기준) 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18 조 (수당의 신설) 교원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당은 임명권자가 별도로 신설할 수 있다.
- 제 19 조 (퇴직금) 교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다. 다만, 동 연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 4 장 보 칙

제 20 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명권자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정년보장심사 규정

제정 2015. 3.20

개정 2018. 7.18

개정 2020. 9.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정년보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3 조 (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교원의 정년보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의과대학장 및 의료원 산하 각 병원장 등 주요보직자에서 선출하는 당연직 위원과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신청자격) 정년보장심사는 부교수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교수 승진심사 기준을 충족한 교원 중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JCR Category 상위 10% 이상인 논문이 1편 이상인 교원
2.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Impact Factor가 5.0 이상인 논문이 1편 이상인 교원
3.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10.0 이상인 교원

제 5 조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① 교원의 정년보장심사시에는 논문에 대한 질적평가, 양적평가, 연구비수혜실적 및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평가하며,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별표와 같다.

② 정년보장심사는 각 평가항목별로 탁월(25점), 우수(20점), 보통(15점), 미흡(10점), 저조(5점) 등 5단계로 평가한다.

③ 정년보장을 위한 각 위원의 평균 평가점수는 2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조 (심사절차) 정년보장심사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년보장심사 신청자격을 갖춘 교원은 연구실적물 제출시 의과대학으로 정년보장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의과대학장은 정년보장심사 신청교원의 자격요건을 확인 후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3. 위원회는 상기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한다.
4. 의과대학장은 심사결과를 의과대학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제 7 조 (심사시기) 정년보장심사는 매학기 학술연구발표심사 후에 실시한다.

제 8 조 (심사제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한정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9 조 (적용의 예외) 학생교육 및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교원은 상기 제5조의 정년보장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제 10 조 (세부사항) 정년보장심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년보장 심사항목별 가중치

평가항목	평가내용	가중치	평가방법
논문의 질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 중 ① JCR Category 상위 10% 이상인 논문 또는 ② Impact Factor가 5.0 이상인 논문의 기여율을 심사	40%	탁월 : 25점 우수 : 20점 보통 : 15점 미흡 : 10점 저조 : 5점
논문의 양	SCI(E) 등재학술지에 교신저자로 발표한 원저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10.0 이상 여부 및 해당 논문에 대한 기여율을 심사	30%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책임자로서의 연구비 수혜실적을 심사	20%	
대학원생 배출실적	대학원생 배출실적을 심사	10%	

(참고) 가중치 적용 평가점수 환산표

(단위 : 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40%	10.0	8.0	6.0	4.0	2.0
30%	7.5	6.0	4.5	3.0	1.5
20%	5.0	4.0	3.0	2.0	1.0
10%	2.5	2.0	1.5	1.0	0.5
계	25	20	15	10	5

(서식 2)

정년보장심사 평가서

■ 신청자

기관	진료과	직위	성명	세부전공분야	정년보장 신청일

■. 평가내용

평가항목	가중치	탁월 (25점)	우수 (20점)	보통 (15점)	미흡 (10점)	저조 (5점)	평가의견																														
논문의 질	40%																																				
논문의 양	30%																																				
연구비 수혜실적	20%																																				
대학원생 지도실적	10%																																				
총점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h>구분</th> <th>25점</th> <th>20점</th> <th>15점</th> <th>10점</th> <th>5점</th> </tr> <tr> <td>40%</td> <td>10.0</td> <td>8.0</td> <td>6.0</td> <td>4.0</td> <td>2.0</td> </tr> <tr> <td>30%</td> <td>7.5</td> <td>6.0</td> <td>4.5</td> <td>3.0</td> <td>1.5</td> </tr> <tr> <td>20%</td>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d>1.0</td> </tr> <tr> <td>10%</td> <td>2.5</td> <td>2.0</td> <td>1.5</td> <td>1.0</td> <td>0.5</td> </tr> </table>		구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40%	10.0	8.0	6.0	4.0	2.0	30%	7.5	6.0	4.5	3.0	1.5	20%	5.0	4.0	3.0	2.0	1.0	10%	2.5	2.0	1.5	1.0	0.5	평가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					
구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40%	10.0	8.0	6.0	4.0	2.0																																
30%	7.5	6.0	4.5	3.0	1.5																																
20%	5.0	4.0	3.0	2.0	1.0																																
10%	2.5	2.0	1.5	1.0	0.5																																
평가자의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기관 : 직위 : 성명 : (인)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1989. 3. 1
개정 1991.10.10
개정 1995.11. 9
개정 1996.12.19
개정 2014. 5.30
개정 2016. 6.28
개정 2021. 2.18
개정 2022. 2.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교원 인사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의과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의과대학장, 각 병원장, 교무부학장의 당연직 위원과 전임교원 중 선출된 4인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되며, 선출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에 따라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이 위원회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한 기초의학교원인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과대학교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의과대학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4 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조 (회의록작성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이 확인 서명 날인한다.

제 6 조 (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①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의학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8-3-1 ~ 2 제위원회

3. 이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과대학 내규 및 지침 제/개정,폐지 현황

구분(내부결재)	내규 및 지침명	제/개정, 폐지	시행일(적용)	심의일	비고(담당)
2023. 3.29	의과대학 연구전임교원 임용 내규	개정	2023-2학기~	2023. 3	정정구
2023. 5.31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5. 1	2023. 5.25	염인실
2023. 7.10	의과대학 발전위원회 내규	개정	2023. 8. 1	2023. 7.10	신건택
2023. 7.26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3. 8. 1	2023. 3. 1	정정구
2023. 8.22	의과대학 유급생 관리 운영 지침	개정	2023. 9. 1	2023. 8	염인실
2023. 9.10	의과대학 학생 학술연구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	2023. 9. 1	2023. 8	정진영
2023. 9.18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3. 9. 1	2023. 8	염인실
2023.10.24	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3. 6. 1	2023. 9	이은지
2023.10.25	의과대학 의학과 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개정	2023.10. 1	2023.10.4	염인실
2023.11.22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3. 3. 1	2023. 2	이은지
2023.11.22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3. 3. 1	2023. 2	이은지
2023.12. 5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개정	2023.12. 1	2023.10.24	김민선
2024. 1. 8 (공포 1.5)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1 1	2023.12.14	기획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기획팀
2024. 1.17	의과대학 학생의 연구시설 사용 지침	개정	2024. 1.17	2023.12.28	정진영
2024. 2.14 (공포 2.6)	직제 규정	개정	2024. 2. 1	2024. 2. 6	기획팀
2024. 2.14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4. 2. 1	2024. 1.25	하인수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2024. 4.24	한림대학교 학칙	개정	2024. 5. 1 (2025. 3. 1)	2024.4.16 2024.4.11	기획팀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직제 규정	개정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6.19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2024. 1. 1	2023.12.16	이은지
2024.10. 4 (공포 10. 2)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 9. 1	2024. 9.12	기획팀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11.11. (공포 11.11)	직제 규정	개정	2025. 3. 1	2024.11. 7	기획팀
	위임 전결 규정	개정			
2024.11.14	의과대학 학생연구 내규 (개정 후 의과대학 학생연구 지침)	개정	2024. 12. 1 (경과조치) 의학통합 6년제 시행 2025.3.1 적용	2024.8.22. 2024.9.23.	정진영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의대 운영위원회) 2024.11.7. (교무위원회)	하인수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이은지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이은지

구분(내부결재)	내규 및 지침명	제/개정, 폐지	시행일(적용)	심의일	비고(담당)
	의과대학 학생평가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기초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후 의과대학 기초의학소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의과대학 의예과소위원회 내규 (개정 후 기본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임상실습소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의과대학 통합교육소위원회 내규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후원회 규약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후원기금 운영세칙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의학과 발전기금 운영세칙	개정			정진영
	의학관 공동실험실 관리운영 지침	개정			정진영
	의과대학 학생선발위원회 내규	개정			정진영
	2024.12.31	의과대학 교육평가 지침			개정
의과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침		개정	정혜윤, 노현주		
의과대학 유급학생 선이수 지침		개정	노현주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하인수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교원평가위원회 내규		개정	2024.3.1	2024.2.28	염인실
2025.01.14	의과대학 임상의학분야교원 업적평가 규정	개정	2024.12.1	2025.1.14	기획팀
2025.04.22	의과대학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내규	개정	2025.02.01	2025.04.22	염인실

※ 심의일: 내규 및 지침 최종 심의위원회 일자, 공포일(내부결재 상정일)